

제356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1월31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3.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34.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5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5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5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5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5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5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62.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64. 財政法規에依據한出納計算의數字및記載事項의訂正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6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6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68.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9.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0.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3.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관한 청원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6. 업무보고

가. 기획재정부

나. 한국은행

상정된 안건

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김성원 · 이양수 · 강석진 · 김명연 · 민경욱 · 김정재 · 이은권 · 전희경 · 정태옥 의원 발의)(계속) 8
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 박용진 · 이동섭 · 이개호 · 황주홍 · 김종희 · 변재일 · 이종걸 · 민홍철 · 장정숙 · 오세정 의원 발의)(계속) 8
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
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 · 박덕흠 · 원유철 · 강석호 · 김광립 · 박성중 · 이학재 · 주호영 · 박맹우 · 김재원 · 경대수 · 이철우 · 김정재 의원 발의)(계속) 8
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 · 이명수 · 박맹우 · 조경태 · 김정재 · 정양석 · 정용기 · 장석춘 · 장제원 · 정운천 · 이종구 의원 발의)(계속) 8
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립 의원 대표발의)(김광립 · 김석기 · 강석호 · 이완영 · 최교일 · 이정현 · 김종석 · 김상훈 · 이만희 · 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8
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 · 박광운 · 이동섭 · 유은혜 · 김민기 · 이찬열 · 윤호중 · 신경민 · 권칠승 · 이춘석 · 전해숙 의원 발의)(계속) 9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 · 김광수 · 신용현 · 주승용 · 박주현 · 유성엽 · 천정배 · 손금주 · 오세정 · 김중로 · 김삼화 · 송기석 · 이용호 · 윤영일 · 이동섭 · 장정숙 · 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9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 · 박광운 · 민병두 · 제윤경 · 김관영 · 김영주 · 김태년 · 안규백 · 도중환 · 최인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677)(계속) 9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윤소하 · 이정미 · 김관영 · 이종걸 · 고용진 · 김종민 · 이용호 · 김상희 · 조정식 의원 발의) 9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 · 이태규 · 조배숙 · 서영교 · 황주홍 · 유승민 · 유동수 · 장제원 · 남인순 · 최도자 · 신상진 · 이명수 · 김성원 · 김세연 · 김승희 의원 발의) 9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김상훈 · 김도읍 · 윤영석 · 박맹우 · 김명연 · 조훈현 · 이종명 · 김규환 · 성일중 의원 발의)(계속) 9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 · 김종민 · 박광온 · 문미옥 · 김영춘 · 소병훈 · 박남춘 · 권철승 · 표창원 · 박주민 · 유은혜 의원 발의)(계속) 9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 · 윤소하 · 이학영 · 전해숙 · 박주민 · 이재정 · 이찬열 · 이개호 · 김경협 · 강훈식 의원 발의)(계속) 9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 · 강병원 · 권미혁 · 김병기 · 김병욱 · 김상희 · 김성수 · 노웅래 · 노회찬 · 백재현 · 설훈 · 소병훈 · 송옥주 · 신창현 · 심재권 · 어기구 · 원혜영 · 위성곤 · 유승희 · 이수혁 · 이용득 · 이정미 · 이훈 · 조승래 · 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8304) 9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 · 김석기 · 강석호 · 이완영 · 최교일 · 이정현 · 김종석 · 정태옥 · 유민봉 · 김용태 의원 발의)(계속) 10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 · 김종희 · 이동섭 · 장정숙 · 김삼화 · 권은희 · 송기석 · 김동철 · 신용현 · 채이배 · 김수민 · 이용주 · 천정배 · 정동영 · 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10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 · 추혜선 · 심상정 · 윤소하 · 이정미 · 김종대 · 윤종오 · 김종훈 · 이종걸 · 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02) 10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 · 추혜선 · 심상정 · 윤소하 · 이정미 · 김종대 · 윤종오 · 박주현 · 김종훈 · 이종걸 · 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17) 10
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황주홍 · 박주선 · 김관영 · 김경협 · 장병완 · 오제세 · 박지원 · 주승용 · 손금주 · 박주민 · 조배숙 · 정성호 · 권은희 의원 발의)(계속) 10
2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김현권 · 우원식 · 신경민 · 안규백 · 진선미 · 이찬열 · 서형수 · 전재수 · 신창현 · 김영호 의원 발의)(계속) 10
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 · 이찬열 · 이춘석 · 도종환 · 유은혜 · 문미옥 · 윤관석 · 박범계 · 오영훈 · 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10
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 · 심상정 · 윤소하 · 추혜선 · 김종대 · 이정미 · 김종훈 · 윤종오 · 오제세 · 이종걸 의원 발의) 10
26.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 · 김영호 · 박재호 · 박정 · 신창현 · 김성수 · 김철민 · 전해철 · 정동영 · 정성호 의원 발의) 10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홍일표 · 신용현 · 김삼화 · 오세정 · 김광수 · 하태경 · 최도자 · 윤영일 · 김중로 · 권은희 · 최경환(국) · 김경진 · 이용호 · 송기석 의원 발의) 10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김기선 · 이현승 · 김종석 · 김성원 · 엄용수 · 광대훈 · 백승주 · 경대수 · 정갑윤 · 이은재 · 김한표 의원 발의) 10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 · 유동수 · 지상욱 · 정동영 · 윤영석 · 황주홍 · 박인숙 · 하태경 · 김상훈 · 이철규 · 정운천 의원 발의) 11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소병훈 · 정춘숙 · 장정숙 · 정재호 · 김영진 · 홍영표 · 황주홍 · 이찬열 · 송기현 의원 발의) 11
3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 · 김상훈 · 강석진 · 김승희 · 김진태 · 김성태 · 조경태 · 소병훈 · 나경원 · 엄용수 의원 발의) 11
33.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 · 김정우 ·

- 박재호 · 윤소하 · 박광온 · 김해영 · 박정 · 최인호 · 진선미 · 백재현 의원 발의) 11
34.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 · 이석현 · 김태흠 · 박맹우 · 박완수 · 정갑윤 · 이종구 · 이은재 · 나경원 · 이철규 의원 발의) 11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 · 강훈식 · 소병훈 · 김철민 · 김영호 · 박완주 · 박정 · 송옥주 · 유승희 · 송기현 · 이용득 · 원혜영 · 오영훈 · 이개호 · 신창현 · 문희상 · 유동수 · 강병원 · 어기구 · 설훈 의원 발의) 11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박완수 · 박맹우 · 김승희 · 강석진 · 정유섭 · 곽대훈 · 최연혜 · 조훈현 · 이장우 의원 발의) 11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김철민 · 권철승 · 변재일 · 설훈 · 신경민 · 위성곤 · 이춘석 · 박광온 · 박완주 의원 발의) 11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소병훈 · 박재호 · 원혜영 · 어기구 · 강병원 · 박주민 · 민병두 · 김종민 · 송기현 · 김철민 · 전해철 · 정재호 · 강창일 · 김병기 · 위성곤 · 박영선 · 이훈 · 신창현 · 박정 의원 발의) 11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 · 곽대훈 · 나경원 · 유민봉 · 김석기 · 박맹우 · 박덕흠 · 정태옥 · 이현승 · 김재원 의원 발의) 11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 · 이종배 · 김현권 · 안상수 · 김성찬 · 김용태 · 이개호 · 박명재 · 염동열 · 정태옥 의원 발의) 11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김기선 · 이현승 · 김종석 · 김성원 · 엄용수 · 곽대훈 · 백승주 · 경대수 · 정갑윤 · 이은재 · 김한표 의원 발의) 11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이동섭 · 주승용 · 신용현 · 김수민 · 홍일표 · 김삼화 · 황주홍 · 김광수 · 정동영 · 이용주 · 박지원 의원 발의) 11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김정우 · 신창현 · 정춘숙 · 손혜원 · 손금주 · 양승조 · 정동영 의원 발의) 11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 · 이종명 · 김재원 · 장석춘 · 김정재 · 김석기 · 김한표 · 이완영 · 김성원 · 곽대훈 · 박덕흠 · 김태흠 · 성일종 의원 발의) 11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 · 이학영 · 안호영 · 전해숙 · 김병욱 · 유은혜 · 김성수 · 박홍근 · 위성곤 · 김영호 · 윤관석 의원 발의) 11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표창원 · 김철민 · 김정우 · 노웅래 · 홍의락 · 김영호 · 양승조 · 제윤경 · 소병훈 의원 발의) 11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김해영 · 권철승 · 신경민 · 전현희 · 윤관석 · 이찬열 · 변재일 · 백혜련 · 이춘석 · 김정우 의원 발의) 11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 · 박완수 · 박덕흠 · 유민봉 · 권석창 · 황영철 · 김명연 · 김성원 · 신동근 · 김두관 · 이명수 의원 발의) 11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5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소병훈 · 박재호 · 원혜영 · 어기구 · 강병원 · 박주민 · 민병두 · 김종민 · 송기현 · 김철민 · 전해철 · 정재호 · 강창일 · 김병기 · 위성곤 · 박영선 · 이훈 · 신창현 · 박정 의원 발의) 11
5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이동섭 · 주승용 · 신용현 · 김수민 · 홍일표 · 김삼화 · 김광수 · 정동영 · 이용주 · 박지원 의원 발의) 12
5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김정우 · 신창현 · 정춘숙 · 손혜원 · 손금주 · 양승조 의원 발의) 12
5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김해영 · 권철승 · 신경민 · 전현희 · 윤관석 · 이찬열 · 변재일 · 백혜련 · 이춘석 · 김정우 의원 발의) 12
5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 · 최인호 · 김해영 · 민홍철 · 이종걸 ·

노웅래 · 김민기 · 정재호 · 박재호 · 유성엽 의원 발의)	12
5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 · 박용진 · 전재수 · 정재호 · 이철희 · 이찬열 · 민병두 · 고용진 · 민홍철 · 추미애 의원 발의)	12
5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 · 박명재 · 박덕흠 · 윤영석 · 이채익 · 곽상도 · 이양수 · 송석준 · 이완영 · 신상진 의원 발의)	12
5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5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 · 신용현 · 황주홍 · 정동영 · 김관영 · 김종희 · 이개호 · 김삼화 · 주승용 · 정인화 · 민홍철 의원 발의)	12
5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 · 이원욱 · 안호영 · 최인호 · 전현희 · 안규백 · 윤관석 · 임종성 · 이학재 · 박덕흠 · 엄용수 · 강훈식 · 김정우 · 윤영일 · 민홍철 · 백혜련 의원 발의)	12
6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 · 송기현 · 제윤경 · 표창원 · 조승래 · 전해철 · 심재권 · 윤관석 · 박정 · 강훈식 · 한정애 · 최운열 · 문희상 · 민병두 · 송옥주 · 김정우 · 전현희 · 전재수 · 신창현 · 김철민 · 박주민 · 임종성 · 민홍철 의원 발의)	12
6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이학영 · 신창현 · 신경민 · 김정우 · 한정애 · 송옥주 · 김병관 · 김민기 · 유동수 · 조경태 의원 발의)	12
62.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김수민 · 신용현 · 조배숙 · 정동영 · 이동섭 · 김관영 · 이찬열 · 최도자 · 김동철 · 손금주 · 박선숙 · 남인순 의원 발의)	12
63.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64. 財政法規에 依據한 出納計算의 數字 및 記載事項의 訂正에 關한 法律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 · 김성원 · 민경욱 · 김승희 · 임이자 · 강석진 · 함진규 · 김선동 · 정태욱 · 이종명 의원 발의)	12
6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 · 유동수 · 지상욱 · 윤영석 · 황주홍 · 박인숙 · 하태경 · 김상훈 · 이철규 · 정운천 의원 발의)	12
6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 · 김성수 · 신창현 · 고용진 · 소병훈 · 김철민 · 전해철 · 윤관석 · 박정 · 심기준 · 유동수 · 박남춘 의원 발의)	12
6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김해영 · 권칠승 · 전현희 · 윤관석 · 이찬열 · 변재일 · 백혜련 · 이춘석 · 김정우 의원 발의)	12
68.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 · 박준영 · 김승희 · 유기준 · 김정진 · 이은재 · 박맹우 · 정우택 · 문진국 · 최교일 의원 발의)	12
69.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김기선 · 이현승 · 김종석 · 김성원 · 엄용수 · 곽대훈 · 백승주 · 경대수 · 정갑윤 · 이은재 · 김한표 의원 발의)	12
70.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김기선 · 이현승 · 김종석 · 김성원 · 엄용수 · 곽대훈 · 백승주 · 경대수 · 정갑윤 · 이은재 · 김한표 의원 발의)	12
7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김수민 · 신용현 · 조배숙 · 정동영 · 이동섭 · 김관영 · 이찬열 · 최도자 · 김동철 · 손금주 · 박선숙 · 남인순 의원 발의)	12
7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 · 문진국 · 김경협 · 이용득 · 최인호 · 박정 · 신창현 · 박찬대 · 장석춘 · 위성곤 · 윤호중 · 홍영표 · 김경수 · 강병원 · 진영 의원 발의)	13
73.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관한 청원(이학재 의원의 소개로 제출)	13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 · 이동섭 · 송기석 · 황주홍 · 김삼화 · 최경환(국) · 장정숙 · 정인화 · 김수민 · 채이배 의원 발의)	13
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 · 박용진 · 손혜원 · 유동수 · 윤관석 · 박영선 · 홍영표 · 김정우 · 조승래 · 유승희 · 제윤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19)	13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 · 김정우 · 박찬대 · 추미애 · 노웅래 · 김철민 · 박영선 · 윤관석 · 소병훈 · 유동수 · 최도자 · 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21)	13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 · 정성호 · 김정우 · 박준영 · 박정 · 한정애 · 김영진 · 정재호 · 유승희 · 문희상 · 김관영 · 박재호 · 이용득 · 전현희 · 이수혁 · 신창현 · 손혜원 · 김경협 의원 발의)	13
7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황주홍 · 전해숙 · 김종희 · 윤영일 · 유민봉 · 김해영 · 문희상 · 김병욱 · 이원욱 · 박인숙 의원 발의)	13
7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 · 김규환 · 박명재 · 원유철 · 정갑윤 · 나경원 · 강석진 · 경대수 · 신보라 · 정운천 의원 발의)	13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 · 유승희 · 문희상 · 정성호 · 박정 · 김경협 · 이용득 · 민병두 · 전현희 · 이수혁 · 남인순 · 신창현 · 손혜원 의원 발의)	13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주승용 · 황주홍 · 전해숙 · 이동섭 · 김종희 · 윤영일 · 김수민 · 김해영 · 김병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16)	13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 · 이명수 · 신용현 · 김석기 · 원유철 · 최연혜 · 조훈현 · 이종배 · 홍일표 · 성일종 의원 발의)	13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황주홍 · 전해숙 · 이동섭 · 김종희 · 윤영일 · 유민봉 · 김해영 · 김병욱 · 오세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31)	13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 · 김영호 · 신창현 · 민홍철 · 이원욱 · 문희상 · 조승래 · 정재호 · 김민기 · 유승희 의원 발의)	13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 · 안규백 · 박찬대 · 김철민 · 윤관석 · 소병훈 · 박정 · 김정우 · 조승래 · 박영선 의원 발의)	13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 · 김성원 · 정유섭 · 조훈현 · 성일종 · 문진국 · 정태옥 · 김정재 · 김종석 · 윤영석 · 이현재 · 최교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45)	13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 · 성일종 · 김성원 · 김석기 · 문진국 · 주광덕 · 김정재 · 김순례 · 정태옥 · 추경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67)	13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송기현 · 조승래 · 노웅래 · 신창현 · 김정우 · 박정 · 정성호 · 김병관 · 추미애 · 전해숙 · 유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91)	13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 · 문진국 · 이종명 · 백승주 · 이철규 · 김광립 · 이명수 · 김중로 · 조훈현 · 김석기 의원 발의)	13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 · 변재일 · 남인순 · 정성호 · 이재정 · 홍의락 · 정인화 · 김현권 · 금대섭 · 이찬열 · 이학영 · 김해영 · 박용진 · 전현희 의원 발의)	13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송기현 · 조승래 · 노웅래 · 신창현 · 김정우 · 박정 · 정성호 · 김병관 · 추미애 · 송옥주 · 전해숙 · 유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1299)	13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김도읍 · 김상훈 · 윤영석 · 박맹우 · 김명연 · 이종명 · 원유철 · 권성동 · 이진복 의원 발의)	14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 · 강병원 · 강창일 · 강훈식 · 김두관 · 김병욱 · 김영호 · 노웅래 · 문희상 · 박범계 · 박찬대 · 서영교 · 신창현 · 어기구 · 유동수 · 이수혁 · 전해철 · 전현희 · 조승래 · 최윤열 · 최인호 · 표창원 · 한정애 의원 발의)	14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 · 이동섭 · 김종희 · 정동영 · 손금주 · 이용호 · 주승용 · 조배숙 · 윤영일 · 김경협 · 송기석 · 정인화 · 김수민 · 박지원 · 황주홍 · 김중로 · 박주선 · 김관영 · 이용주 · 최도자 의원 발의)	14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박지원 · 황주홍 · 고용진 · 주승용 · 박주선 · 송기석 · 박광온 · 민병두 · 정재호 · 위성곤 · 정성호 · 최도자 · 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38)	14
96. 업무보고	18

나. 한국은행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조경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1월 29일 자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진출입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이태희 입법조사관이 국제국 의전 담당으로 진출되었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직원 인사)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윤동준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작년 12월 경제재정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과 세입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본회의 자동 부의 후 수정 통과된 같은 제명의 법률안에 이미 그 내용이 반영된 법안들을 먼저 처리한 다음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법안 상정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성원·이양수·강석진·김명연·민경욱·김정재·이은권·전희경·정태욱 의원 발의)(계속)
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박용진·이동섭·이개호·황주홍·김종희·변재일·이종걸·민홍철·장정숙·오세정 의원 발의)(계속)
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박덕흠·원유철·강석호·김광림·박성중·이학

재·주호영·박맹우·김재원·경대수·이철우·김정재 의원 발의)(계속)

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이명수·박맹우·조경태·김정재·정양석·정용기·장석춘·장제원·정운천·이종구 의원 발의)(계속)

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김석기·강석호·이완영·최교일·이정현·김종석·김상훈·이만희·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09분)

○위원장 조경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박광온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박광온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임시회 기간 동안 계류 중인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형태와 규모 그리고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추가하되 위탁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명직 금융통화위원이 전임 위원의 임기 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만료 즉시 개시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통화위원이 최초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 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지방경찰청 및 경찰청의 청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경찰수련원과 소방수련원은 공공청사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 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존경하는 박광온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 셧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우선 법률안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생략을 위 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므로 이 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소위 심사로 대체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국 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의사일정 제4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 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2건의 한

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 사일정 제8항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 표발의)(김해영·박광온·이동섭·유은혜· 김민기·이찬열·윤호중·신경민·권칠 승·이춘석·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 표발의)(채이배·김광수·신용현·주승용· 박주현·유성엽·천정배·손금주·오세 정·김중로·김삼화·송기석·이용호·윤 영일·이동섭·장정숙·최경환(국) 의원 발 의)(계속)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 표발의)(김종민·박광온·민병두·제윤경· 김관영·김영주·김태년·안규백·도종환· 최인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677)(계속)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 표발의)(김영주·윤소하·이정미·김관영· 이종걸·고용진·김종민·이용호·김상 희·조정식 의원 발의)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 표발의)(박인숙·이태규·조배숙·서영교· 황주홍·유승민·유동수·장제원·남인 순·최도자·신상진·이명수·김성원·김 세연·김승희 의원 발의)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 표발의)(정갑윤·김상훈·김도읍·윤영석· 박맹우·김명연·조훈현·이종명·김규 환·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 표발의)(김정우·김종민·박광온·문미옥· 김영춘·소병훈·박남춘·권칠승·표창 원·박주민·유은혜 의원 발의)(계속)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 표발의)(양승조·윤소하·이학영·전혜숙· 박주민·이재정·이찬열·이개호·김경 협·강훈식 의원 발의)(계속)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 표발의)(김종민·강병원·권미혁·김병기·

김병욱·김상희·김성수·노웅래·노회찬·백재현·설훈·소병훈·송옥주·신창현·심재권·어기구·원혜영·위성곤·유승희·이수혁·이용득·이정미·이훈·조승래·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8304)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김석기·강석호·이완영·최교일·이정현·김종석·정태욱·유민봉·김용태 의원 발의)(계속)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김종희·이동섭·장정숙·김삼화·권은희·송기석·김동철·신용현·채이배·김수민·이용주·천정배·정동영·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윤종오·김종훈·이종걸·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02)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윤종오·박주현·김종훈·이종걸·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17)

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황주홍·박주선·김관영·김경협·장병완·오제세·박지원·주승용·손금주·박주민·조배숙·정성호·권은희 의원 발의)(계속)

2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현권·우원식·신경민·안규백·진선미·이찬열·서형수·전재수·신창현·김영호 의원 발의)(계속)

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이찬열·이춘석·도종환·유은혜·문미옥·윤관석·박범계·오영훈·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심상정·윤소하·추혜선·김종대·이정미·김종훈·윤종오·오제세·이종걸 의원 발의)

(11시14분)

○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같은 제명의 법률안에 이미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입법 취지가 달성된 법안을 상정하여 폐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5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각 위원실로부터 제시된 수정 및 보완 의견을 모두 반영한 후 최종적으로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께서 확인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에 대한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김영호·박재호·박정·신창현·김성수·김철민·전해철·정동영·정성호 의원 발의)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홍일표·신용현·김삼화·오제정·김광수·하태경·최도자·윤영일·김중로·권은희·최경환(국)·김경진·이용호·송기석 의원 발의)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기선·이현승·김종석·김성원·엄용수·곽대훈·백승주·경대수·정갑윤·이은재·

김한표 의원 발의)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 · 유동수 · 지상욱 · 정동영 · 윤영석 · 황주홍 · 박인숙 · 하태경 · 김상훈 · 이철규 · 정운천 의원 발의)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소병훈 · 정춘숙 · 장정숙 · 정재호 · 김영진 · 홍영표 · 황주홍 · 이찬열 · 송기현 의원 발의)
3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 · 김상훈 · 강석진 · 김승희 · 김진태 · 김성태 · 조경태 · 소병훈 · 나경원 · 엄용수 의원 발의)
33.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 · 김정우 · 박재호 · 윤소하 · 박광운 · 김해영 · 박정 · 최인호 · 진선미 · 백재현 의원 발의)
34.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 · 이석현 · 김태흠 · 박맹우 · 박완수 · 정갑윤 · 이종구 · 이은재 · 나경원 · 이철규 의원 발의)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 · 강훈식 · 소병훈 · 김철민 · 김영호 · 박완주 · 박정 · 송옥주 · 유승희 · 송기현 · 이용득 · 원혜영 · 오영훈 · 이개호 · 신창현 · 문희상 · 유동수 · 강병원 · 어기구 · 설훈 의원 발의)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박완수 · 박맹우 · 김승희 · 강석진 · 정유섭 · 곽대훈 · 최연혜 · 조훈현 · 이장우 의원 발의)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김철민 · 권칠승 · 변재일 · 설훈 · 신경민 · 위성곤 · 이춘석 · 박광온 · 박완주 의원 발의)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소병훈 · 박재호 · 원혜영 · 어기구 · 강병원 · 박주민 · 민병두 · 김종민 · 송기현 · 김철민 · 전해철 · 정재호 · 강창일 · 김병기 · 위성곤 · 박영선 · 이훈 · 신창현 · 박정 의원 발의)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 · 곽대훈 · 나경원 · 유민봉 · 김석기 · 박맹우 · 박덕흠 · 정태옥 · 이

헌승 · 김재원 의원 발의)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 · 이종배 · 김현권 · 안상수 · 김성찬 · 김용태 · 이개호 · 박명재 · 엄동열 · 정태옥 의원 발의)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김기선 · 이헌승 · 김종석 · 김성원 · 엄용수 · 곽대훈 · 백승주 · 경대수 · 정갑윤 · 이은재 · 김한표 의원 발의)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이동섭 · 주승용 · 신용현 · 김수민 · 홍일표 · 김삼화 · 황주홍 · 김광수 · 정동영 · 이용주 · 박지원 의원 발의)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김정우 · 신창현 · 정춘숙 · 손혜원 · 손금주 · 양승조 · 정동영 의원 발의)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 · 이종명 · 김재원 · 장석춘 · 김정재 · 김석기 · 김한표 · 이완영 · 김성원 · 곽대훈 · 박덕흠 · 김태흠 · 성일종 의원 발의)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 · 이학영 · 안호영 · 전혜숙 · 김병욱 · 유은혜 · 김성수 · 박홍근 · 위성곤 · 김영호 · 윤관석 의원 발의)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표창원 · 김철민 · 김정우 · 노웅래 · 홍의락 · 김영호 · 양승조 · 제윤경 · 소병훈 의원 발의)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김해영 · 권칠승 · 신경민 · 전현희 · 윤관석 · 이찬열 · 변재일 · 백혜련 · 이춘석 · 김경우 의원 발의)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 · 박완수 · 박덕흠 · 유민봉 · 권석창 · 황영철 · 김명연 · 김성원 · 신동근 · 김두관 · 이명수 의원 발의)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소병훈 · 박재호 · 원혜영 · 어기구 · 강병원 · 박주민 · 민병두 · 김종민 · 송기현 · 김철민 · 전해철 · 정재호 · 강창일 · 김병기 · 위성곤 · 박영선 · 이훈 ·

신창현·박정 의원 발의)

5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이동섭·주승용·신용현·김수민·홍일표·김삼화·김광수·정동영·이용주·박지원 의원 발의)
5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정우·신창현·정춘숙·손혜원·손금주·양승조 의원 발의)
5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해영·권칠승·신경민·전현희·윤관석·이찬열·변재일·백혜련·이춘석·김정우 의원 발의)
5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최인호·김해영·민홍철·이종걸·노웅래·김민기·정재호·박재호·유성엽 의원 발의)
5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박용진·전재수·정재호·이철희·이찬열·민병두·고용진·민홍철·추미애 의원 발의)
5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박명재·박덕흠·윤영석·이채익·곽상도·이양수·송석준·이완영·신상진 의원 발의)
5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신용현·황주홍·정동영·김관영·김종희·이개호·김삼화·주승용·정인화·민홍철 의원 발의)
5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이원욱·안호영·최인호·전현희·안규백·윤관석·임종성·이학재·박덕흠·엄용수·강훈식·김정우·윤영일·민홍철·백혜련 의원 발의)
6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송기현·제윤경·표창원·조승래·전해철·심재권·윤관석·박정·강훈식·한정애·최운열·문희상·민병두·송옥주·김정우·전현희·전재수·신창현·김철민·박주민·임종성·민홍철 의원 발의)
6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이학영·신창현·신경민·김정우·한정

애·송옥주·김병관·김민기·유동수·조경태 의원 발의)

6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수민·신용현·조배숙·정동영·이동섭·김관영·이찬열·최도자·김동철·손금주·박선숙·남인순 의원 발의)
6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4. **財政法規에依據한出納計算의數字및記載事項의訂正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김성원·민경욱·김승희·임이자·강석진·함진규·김선동·정태욱·이종명 의원 발의)
6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유동수·지상욱·윤영석·황주홍·박인숙·하태경·김상훈·이철규·정운천 의원 발의)
6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김성수·신창현·고용진·소병훈·김철민·전해철·윤관석·박정·심기준·유동수·박남춘 의원 발의)
6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해영·권칠승·전현희·윤관석·이찬열·변재일·백혜련·이춘석·김정우 의원 발의)
68.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박준영·김승희·유기준·김경진·이은재·박맹우·정우택·문진국·최교일 의원 발의)
69.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기선·이현승·김종석·김성원·엄용수·곽대훈·백승주·경대수·정갑윤·이은재·김한표 의원 발의)
70.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기선·이현승·김종석·김성원·엄용수·곽대훈·백승주·경대수·정갑윤·이은재·김한표 의원 발의)
7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수민·신용현·조배숙·정동영·이동섭·김관영·이찬열·최도자·김동철·손금주·박선숙·남인순 의원 발의)

7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문진국·김경협·이용득·최인호·박정·신창현·박찬대·장석춘·위성곤·윤호중·홍영표·김경수·강병원·진영 의원 발의)
73.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관한 청원**(이학재 의원의 소개로 제출)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이동섭·송기석·황주홍·김삼화·최경환(국)·장정숙·정인화·김수민·채이배 의원 발의)
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박용진·손혜원·유동수·윤관석·박영선·홍영표·김정우·조승래·유승희·제윤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19)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김정우·박찬대·추미애·노웅래·김철민·박영선·윤관석·소병훈·유동수·최도자·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21)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정성호·김정우·박준영·박정·한정애·김영진·정재호·유승희·문희상·김관영·박재호·이용득·전현희·이수혁·신창현·손혜원·김경협 의원 발의)
7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전혜숙·김종회·윤영일·유민봉·김해영·문희상·김병욱·이원욱·박인숙 의원 발의)
7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김규환·박명재·원유철·정갑윤·나경원·강석진·경대수·신보라·정운천 의원 발의)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유승희·문희상·정성호·박정·김경협·이용득·민병두·전현희·이수혁·남인순·신창현·손혜원 의원 발의)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주승용·황주홍·전혜숙·이동섭·김종회·윤영일·김수민·김해영·김병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16)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이명수·신용현·김석기·원유철·최연혜·조훈현·이중배·홍일표·성일종 의원 발의)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전혜숙·이동섭·김종회·윤영일·유민봉·김해영·김병욱·오세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31)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김영호·신창현·민홍철·이원욱·문희상·조승래·정재호·김민기·유승희 의원 발의)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안규백·박찬대·김철민·윤관석·소병훈·박정·김정우·조승래·박영선 의원 발의)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김성원·정유섭·조훈현·성일종·문진국·정태욱·김정재·김종석·윤영석·이현재·최교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45)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성일종·김성원·김석기·문진국·주광덕·김정재·김순례·정태욱·추경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67)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송기현·조승래·노웅래·신창현·김정우·박정·정성호·김병관·추미애·전혜숙·유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91)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문진국·이종명·백승주·이철규·김광림·이명수·김중로·조훈현·김석기 의원 발의)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변재일·남인순·정성호·이재정·홍의락·정인화·김현권·금태섭·이찬열·이학영·김해영·박용진·전현희 의원 발의)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송기현·조승래·노웅래·신창현·김정우·박정·정성호·김병관·추미애·송옥주·전혜숙·유동수 의원 발의)

의)(의안번호 11299)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김도읍·김상훈·윤영석·박맹우·김명연·이종명·원유철·권성동·이진복 의원 발의)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강병원·강창일·강훈식·김두관·김병욱·김영호·노웅래·문희상·박범계·박찬대·서영교·신창현·여기구·유동수·이수혁·전해철·전현희·조승래·최운열·최인호·표창원·한정애 의원 발의)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이동섭·김종회·정동영·손금주·이용호·주승용·조배숙·윤영일·김경협·송기석·정인화·김수민·박지원·황주홍·김중로·박주선·김관영·이용주·최도자 의원 발의)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박지원·황주홍·고용진·주승용·박주선·송기석·박광온·민병두·정재호·위성곤·정성호·최도자·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38)

(11시16분)

○**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5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이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3항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의원**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 금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동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의 적용대상 기업에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산업은 특성상 인프라 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 공

공성이 매우 큼니다. 향후 에너지·자원 안보 문제를 고려할 때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중심이 돼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는 석유나 석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법이나 대한석탄공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와 달리 언제든 가스공사는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동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영화를 가능하게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여 한국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가스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국가의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부디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이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3항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른정당 인천 서구갑 이학재 의원입니다.

인천 국세청 신설을 청원한 의원으로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세청 산하에는 6개의 지방청이 있습니다. 이 중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인천과 경기·강원 지역의 세무행정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지방청에서 관할하는 지역의 면적과 인구·세무서는 타 지방청이 관할하는 면적과 인구·세무서에 비해 2배 이상의 크고 많은 규모입니다.

게다가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에 계속해서 신도시가 개발되고 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세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세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천은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각종 공단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경제구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이 현장에 밀착한 세원 관리나 항만, 물류산업 등에 특화된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여론 때문에 인천 지역을 전담하는 조직을 2012년과 2017년에 각각 신설했으나 지역 상공인들과 주민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지원하거나 지역 특성에 맞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은 인구 300만 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3대 도시입니다. 하지만 인천은 7개 특·광역시 중 사실상 지방국세청이 없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의 GRDP는 2015년 기준으로 75조 7000억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특·광역시 중 세 번째이며, 인구는 지난 몇 년간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인천 지역의 위상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국세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청원을 검토하시고 인천지방국세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이학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3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의원 존경하는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 지역 김종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서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약 등의 기자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을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협은 농약 제조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농약을 공급받아서 농민에게 판매하나 일반 현장의 판매업자들은 농약 제조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농약을 공급받아서 농민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판매한 후에 농민 확인 절차를 현장에서 일일이 거쳐서 환급 신청을 받는 구조로 농협 등에 비해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약에 대해서 농민에게만 영세율을 적용하고 농민 이외에 영세율을 적용한 농약 판매를 막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나 현장에서 실상을 보면 농약이 농민 이외에 판매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농민에게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주민등록을 확인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으로 인한 갈등이 큰 실정입니다.

이에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판매업자를 통해서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약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협과 민간 판매상들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된 판매업자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약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디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타당성 분석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소득 이전 지출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담배의 제조·판매 관련 등록,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바로 등록이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영업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선거 관련 기본적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임을 감안, 법률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김동연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듣지 않은 나머지 안건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6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광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제·재정 관련 법률안과 청원 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수석전문위원 김광묵입니다.

경제·재정 분야 4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해 검토의견을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장이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 내의 기관으로서 국회의 인사 추천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지정이나 임원 임명 등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추천 인사를 운영위원회에 포함하여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32페이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되던 사건수사비·안보활동비·정보수집비 등 일정한 업무를 명시한 세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면 그 집행 내역이 공개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기밀이 요구되는 특수활동비의 본질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고, 집행 내역이 공개될 경우에는 특수활동비 집행이 사실상 어려워져 국가안보와 치안 유지를 위한 정상적인 정보·수사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특수활동비의 세목별 편성은 최소한의 용처를 지정함으로써 특수활동비를 예산 편성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0페이지,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소득이전 지출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성 분석의 실익이 적은 소득이전 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범위를 넓히는 것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심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부담금의 설치 목적, 징수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이 지자체 등에 적정하게 귀속되도록 하며 부담금 신설·변경 심사 기준과 부담금 운용평가 기준으로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을 정함에 있어 징수기여의 대가 등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부담금의 신설·변경 심사 및 부담금

운용평가의 부담금 귀속의 적절성을 반영함으로써 부담금 귀속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지자체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별지입니다.

이학재 의원이 소개한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관한 청원입니다.

동 청원은 인천광역시의 인구 및 경제 규모 증가에 따라 인천지방국세청의 신설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국세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직제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연간 40억 원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를 관할하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은 타 지방국세청에 비해 과도한 납세 인원을 관리하고 있고 관할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세정수요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경태 김광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세 관련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박상진 전문위원입니다.

조세 관련 법률안 22건에 대해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김경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으로 연 3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금액 위임 규정을 삭제하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를 한도 제한 없이 인정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한도 없이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했던 종전의

입법례, 직무발명 촉진 필요성, 과세 형평성 등 조세의 기본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령으로 현재 3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 비과세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이찬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현행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는 보석 중 나석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해외시장에서 주얼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주얼리시장의 양성화에 따라 세원 확보를 통한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귀금속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 주얼리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얼리시장의 음성화 규모 등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박준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세액 감면 우대가 적용되는 청년 창업자의 연령 기준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여 30대 초반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30대 초반 창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20대와 같이 상향하는 경우 최근 감소하고 있는 30대 초반 연령대의 창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29세 이하 창업에 대해서만 세액 감면을 우대하는 것은 20대의 창업 실패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윤호중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감면제도의 일몰 기한을 현행 2018년 말에서 2023년 말까지 5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택시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택시 수요는 감소하고 있고 요금 인상이 억제되어 경영여건이 어려운 택시업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일몰 연장 지속 여부의 실질적인 효과와 지역별 택시요금 인상 압박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경태 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대체토론과 질의응답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6. 업무보고

가. 기획재정부

나. 한국은행

(11시33분)

○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96항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2018년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 호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불확실 요인이 많기는 하지만 내수가 살아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늘고 임금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 효과가 큰 노동, 주택, 금융시장에서 불안 요소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강남 집값 잡기, 가상통화 규제와 같은 경제정책들이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처럼 주어진 세계 경제의 호황기에 우리 경제가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집권 2년 차에 주요 경제정책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필요하면 수정해야 합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업무보고가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현안들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정책 대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중국에서 오늘부터 개최되는 한·중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오후 5시경 이석하

고자 하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 점 고려하셔서 가급적이면 부총리에게 먼저 질의해 주실 것을 양해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면서 3%대 성장, 일자리 32만 개 증가,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며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도도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3만 불 소득시대의 원년으로 소득 수준에 걸맞은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소득주도성장 추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제, 조달, 공공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 지원체제로 운용하겠습니다.

특히 에코붐 세대 인구의 대폭 증가로 향후 3~4년 동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접근 방식이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유도, 임금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핵심 생계비 경감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들의 삶의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혁신성장을 보다 가속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겠습니다.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손에 잡히는 변화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입법 등 그림자 규제를 전면 재정비하고 규제샌드박스, 혁신성장 옴부즈만 등을 통해 혁신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18년 중에 2조 6000억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75개소 구축하는 등 혁신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창업 등 혁신 열기가 경제·사회 전반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양대 성장 축의 기반이 되는 공정 경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정 경제 질서 확립, 부문 간 상생협력 등을 통해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논의 등을 바탕으로 공평 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과 공공부문을 혁신하겠습니다.

올해도 강도 높은 지출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관리체계는 공공성, 사회적 가치와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운영·관리·평가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거시 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중장기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재정의 조기 집행, 안전 투자 확대, 관광 경쟁력 강화 등 소비·투자 활력 제고를 통해 경기 회복세를 유지·확산시켜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부동산시장 안정화, 선제적 기업·산업 구조조정 등 대내 위험 요인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외 신인도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다양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중장기 시계에서 대내외 도전 요인을 점검·분석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재정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부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기획재정부 모든 직원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진정성을 갖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관계부처,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업무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현안업무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부 소개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 보고에서는 이번에 새로 임명된 우리 부 간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욱 국유재산심의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무경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정무경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재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대내외 여건 그리고 2018년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주요 정책 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 대내외 여건입니다.

성장 여건 관련해서는 2017년 3.1% 성장에 이어 2018년에도 성장모멘텀이 유지될 전망이나 금리 상승 등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소득 여건과 관련해서는 17년 추경 및 18년 일자리 예산 확대 등으로 고용 증가세가 유지되나 고용 없는 성장, 생산가능인구 감소세 전환 등은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기초연금과 복지예산 확충이 소득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쪽입니다.

산업 관련해서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은 호조세이나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창출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여건과 관련해서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이는 향후 성장잠재력 둔화, 노인 빈곤 심화 등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2018년은 3만 불 소득시대의 원년으로서 사람 중심 경제 본격 구현을 통해 소득 수준에 걸맞은 국민의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일자리·소득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소득주도성장을 위하여 예산, 세제, 조달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 지원 체계로 운용하면서 특히 청년고용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임금 격차 해소, 생계비 경감 등 소득주도성장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둘째,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핵심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혁신성장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혁신창업 활성화 지원, 규제혁신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셋째, 공정 경제를 위해서는 공정경제 질서 확립, 부문 간 상생협력 등을 통해 성장 과실이 가계, 중소기업 등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게 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고용 불안, 양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재정·세제 개혁 및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혁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시 경제 안정과 중장기 도전 과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성장세를 유지 및 확산하면서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한 전략 수립 등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으로 기재부가 18년도에 추진할 주요 정책 과제입니다.

먼저, 일자리·소득주도성장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산, 세제, 조달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 지원

체계로 운용하여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고, 금년에 신설된 고용증대세제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이 부여되도록 개선하였고, 민간의 근본적 고용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 기술형 혁신창업 촉진, 신서비스 모델 창출,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청년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 등 정부와 공공부문으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세제 지원과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인구구조를 감안하여 과감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임금 등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비정규직 보호,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등 일자리 질이 제고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저소득 근로자 지원 효과 등을 감안하여 EITC·사회보험 연계 등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계비 경감 및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주거·의료·교육·교통·통신 등 이미 발표한 생계비 경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문별 추가 대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가계소득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재부에서 추진할 주요 과제로 혁신성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선도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도록 기재부에 설치된 혁신성장 지원단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소관 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과 창출에 매진하고 선도사업 지원단별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차례로 개최하여 제도 개선과 예산·세제 지원 사항, 투자 프로젝트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드론산업 기반 구축 방안 등을 이미 발표하였고, 자동차산업 혁신성장 전략과 스마트농업 활성화 등을 앞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로 혁신창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내벤처 지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등 기술 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 확대 및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 국내 벤처 투자의 확대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 계획을 토대로 18년 중에 2.6조 원을 1차 조성하고 연내에 투자자금이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셋째로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핀테크·드론·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관련 핵심 선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점검·철폐하고, 특히 기재부 소관 고시와 내규 등 개정이 용이한 행정규제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이를 전 부처로 확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성장 옴부즈만 등을 통해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침해한 이해갈등 과제는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대외 경쟁력 제고 및 전략적 해외 진출을 촉진하겠습니다.

먼저, 동북아·유라시아 지역과 교통·에너지 등 협력을 위해 신북방정책 로드맵 수립 및 고위급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사람중심·상생번영에 초점을 두어 신남방정책 지역별·국별 실행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WTO, G20 등을 통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FTA 협상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해외 인프라 수주를 위해 민관 합동 수주협의회 운영, 한·UAE 공동위 등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 등을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과 세제, 공공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혁신을 강화하여 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성장과 복지·고용 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등 4대 분야 33개 과제에 대한 지출구조 혁신을 추진하여 이를 19년 예산안 및 18~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노인 빈곤, 청년 실업 등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8~22년 지출 상향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18년 세제 개편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및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공평 과세 및 세입 기반 확충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적정화,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 검토,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저소득 근로자, 영세 사업자에 대한 EITC 확대, 세입 기반 확대 등을 위해 가상화폐 과세 방안 마련,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공공기관 관리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

1단계로 지난해 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하였지만 2단계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성과 함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핵심 가치로 재정립하고, 기관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율 혁신을 지원하고, 채용 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내부 견제 기능을 활성화하여 책임경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로 국유재산 관리 및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국유재산 활용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

해 토지 개발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토지 개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국유지 복합개발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2만 호 공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조달 혁신을 위해 경쟁적 대화 방식 도입을 통해 참여 기업의 기술 경쟁을 유도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보완하여 기술 변별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우선 낙찰제, 창업 기업 제품 집중구매제도 도입, 공사비의 적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강화, 물품과 용역 입찰 시 가점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비전 등을 제시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경제의 5개년 비전 및 목표 설정, 금융·판로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장기 추진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통합 박람회를 금년 상반기에 개최하여 사회적기업 대상 홍보, 판로 확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기재부에서 추진할 과제로서 거시 경제 안정 및 중장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년에도 경제성장세가 유지되고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특히 일자리 예산은 1/4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행하고, 공공투자 2조 원 확대, 학교 내진 보강 조기 완료, 민자시설 복합화 투자 적극 추진 등 국민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민생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및 한국 방문의 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등을 계기로 국내 관광 활성화 등 민생과 밀접한 국내 소비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시중금리 상승 등에 대비하여 가계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부동산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고, 미국 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현안 등 대외 리

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대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전략위원회 및 연구작업반 구성·운영 등을 통해 국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양극화 해소, 출산을 제고, 노동시장 개선, 규제 재설계 등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통상환경 대응,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확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주요 분야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정무경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발언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요 OECD 국가들 또한 2016년 이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부총리, 듣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듣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래서 첫째, 전 OECD 국가들의 2016년 이후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상황, 두 번째 부동산 보유세의 조정 상황 이것을 오후에 질의 전까지 보내 주세요.

세제실장!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이종구 위원 듣고 있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이종구 위원 정확하게 OECD 국가들이 정말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렸는지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했는지 이것을 OECD 전 국가 것을 주라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알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하여튼 오후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아니,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DB 보면 다 나와 있는 것인데 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내세요, 이따 오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저도……

○위원장 조경태 예,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우선 새해를 맞이해서 김동연 부총리 이하 간부들 복 많이 받으시고 파이팅 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유감스럽게도 너무 원론적이고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국감 보고서 이렇게 두툼하게 했는데 이게 거의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우리 경제가 난리가 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최저임금의 뉘를 극복한다든지, 그다음에 선제적인 산업구조 개편이라고 그랬는데 대우조선 이런 문제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과감한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데 업무보고에 과감한 대책이 말만 있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선 6쪽의 과감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무엇인지 자료,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관리체계를 개편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국감 때 문제 지적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회나 평가단이 친정부 인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민간 위원장을 하라든지 만성적인 공기업에는 퇴출제도 과감하게 도입한다든지 성과연봉제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뭔지하고요.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신기업 구조조정 방향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 보면 전부 선문선답이예요, ‘사전 부실 예방, 경쟁력, 시장중심, 금융’.

그러면 당장에 지금 우리 경제의 큰 아킬레스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 문제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런 현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여기에 자료 제약이 있어서 그런지 또 부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국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했고,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분보다도 실물에 밝으신 분이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런 것을 해야지 매년 똑같이 판박이 식으로 일반론적인 장밋빛 업무보고, 18년도에 3만 불 원년이 된다, 이것은 좀 너무 안이한 자세가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 질의 전에 지금 지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기재 위원님들께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의 현 집행간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변동이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용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성장세가 동반하여 강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세계 경제는 주요국의 투자 및 교역 증대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축소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회복세 지속과 재정지출 확대에 힘입어 3% 내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주요국과의 교역 여건 변화와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 하락 및 도시가스 요금 인하로 인해 1%대 중반 수준으로 오름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당분간 물가가 낮은 오름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높아지면서 물가 안정 목표인 2% 수준에 점차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외환 시장에서는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를 반영하여 지난해 10월 이후 금리와 주가가 상승하는 한편,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였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지난해 말 차익 실현 등으로 감소하였다가 올해 들어 순매수로 전

환되었습니다.

한편 은행의 가계대출은 정부 대책의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 상황하에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완화의 정도를 소폭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질적인 완화 정도가 더 확대되면서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물가상승률이 중기적으로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성장세의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당분간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완화 정도의 추가조정 여부는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 그리고 금융 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용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한국은행의 업무 현황은 경영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임형준 부총재보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형준 부총재보 나오셔서 간략하게 핵심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부총재보 임형준 경영기획 담당 부총재보 임형준입니다.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 등을 담은 일반현황과 총재님이 인사말씀에서 언급하신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 통화신용정책 운용 현황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그 외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융 안정과 관련된 업무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외환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 지난해 북한 리스크, 미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등 금융·외환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여 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총 13회에 걸쳐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또는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하고 공개시장 운영도 신축적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내외 리스크 요인과 그에 따른 금융·외환 시장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등 중층적인 금융안전망 확충을 통한 대내외 충격흡수 능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호주·중국 등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였으며 금년에는 ASEAN+3 의장국으로서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계부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금년에는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확대 등 금융 부문의 여건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각별히 유의하고 필요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금융 안정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급결제 분야입니다.

2020년 가동을 목표로 차세대 한은 금융망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급결제 인프라 확충·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통화와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관계기관 합동 TF 등에 참여하여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상통화가 확산될 경우 화폐제도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금년 1월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상통화 및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와 관련된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지급결제 인프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지급결제 인프라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령화 등 구조적 성장 제약 요인에 대한 연구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19년부터 적용될 중기 물가 안정 목표 설정과 관련된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경기 판단 및 경제전망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국 중앙은행, 국제기구, 학계와의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해외기관과의 협력을 증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통계 분야에서는 기술혁신에 따른 신산업의 출현 등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통계의 개발·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및 공유경제의 GDP 반영도 제고,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 모색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작성 통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통계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통계청, UN 등 정부, 국제기구, 학계 등과의 통계 협력도 증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외환보유액 운용과 관련해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안전성 및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투자전략 수립 등을 통해서 자산 운용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은행과의 자산배분 전략 논의,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교류·협력,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등을 통해 운용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한편 화폐 수급 분야에서는 민간의 화폐수요에 맞추어 화폐를 원활히 공급하고 금년 설 명절을 전후한 민간의 화폐수요 변화에도 적극 부응하는 한편, 관련 보안 조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창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나 우리나라의 자연유산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념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G20, IMF, BIS, FSB 등 주요 국제기구 및 협의체의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제기구의 포용적 성장 등 글

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도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 변화와 파급영향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파악하고 필요시 능동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정책경험 전수를 희망하는 개도국들에 대해 중앙은행 업무연수를 실시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자로서의 역할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경영 부문입니다.

인사·급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인력 충원 경로를 다양화하는 한편, 사이버 공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영 리스크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준법관리활동을 강화하고 조사·연구 자료의 대외 공개를 확대하는 등 조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조경태 추경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추경호 위원 한국은행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자료 12쪽에 보면 2017년 가계대출 통계표에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이 있는데 여기에 10월·11월 기타대출이 그 전 달 또는 그다음의 12월에 비해서 규모가 갑자기 약 2배 정도로 늘어나 있거든요. 이 원인에 관해서 설명하는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한국은행 총재,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한은 총재한테 소위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노동 시간 단축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물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것이 코스트푸시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유의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한국은행의 출중하신 박사님들이 연구를 해서 자료를 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이종구 위원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후에 코스트푸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노동 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연구를 하셨겠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구 자료를 내주세요. 이것은 총재가 그 당시에 약속을 한 거예요, 내겠다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최대의 관심사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이런 것을 연구 안 하고 무수한 박사들이 말이지, 경제학 박사들이 이런 걸 해서 정부를 도와줘야지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 시간 단축이 금년도 물가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겁니다. 벌써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다 연구하셨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이따 질의 전까지 주세요,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니까.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 부총리님, 저도 최저임금하고 일자리 얘기할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번에 가상화폐에 혼선이 굉장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경제수장이신데 이 문제를 왜 이렇게 거래소 폐쇄 얘기가 막 한참 만연할 때까지 부총리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떤 얘기도 정부 내부에서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혼선이 극대화된 다음에 이것을 수습하는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소 폐쇄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그렇지요? 우리나라가 자유시장경제체제인데요. 그것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뭐냐? 가상화폐 문제는 대책을 충분히 미리 빨리 내놓지 않은 정부의 잘못입니다, 근본적으로요.

그런데 그것을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니까 그다음에 갑자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그렇게 되면 시장을 신뢰하고 투자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유재산권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문제가 시장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대책을 내놓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가상통화 문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법률적인 문제가 같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국무총리께서 직접 대책 마련 지시를 해서 총리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을 거래소 폐쇄 이런…… 굉장히 우악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식의 예측 불가능한 얘기를 정부 부처에서 마구 쏟아 내지 않고 그리고 이런 혼선을 갖고 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그것은 경제수장께서 책임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는 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입니다. 국민들한테 그 피해를 떠넘기시면 안 됩니다.

일자리하고 최저임금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지금 사실은 물가가 굉장히 심각해요. 특히 생활물가가 심각합니다. 우리 한은 총재님 아까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 사람들에게, 일반 대중들한테 물어보시면 사람들이 코웃음 치세요. 밖에 나가서요, 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에 한번 가 보십시오. 평균적으로 다 이삼천 원씩 올랐고 그리고 특히 알바들을 많이 쓰는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햄버거가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햄버거 하나가요? 아세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햄버거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싸게는 3000원에서 한 6000원 사이 이쯤 되지 않을까……

○이언주 위원 요즘에는 3000원짜리 보기 힘들습니다. 그것은 몇 달 전 얘기고요. 그 전이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시기는 모르지만 지금은 막 7000원, 8000원 이래요, 세트 가격이요. 그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이 어떤지를 좀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제가 계속 경고를 해 왔는데 사실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경제정책이라는 게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하고 물가 상승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약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거예요. 흔히 정부는 말로는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위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경제적 약자가 가장 먼저 피해 보는 상황이 된다, 이것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왜 그러냐? 최저임금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 수준, 그다음에 경제구조의 특성…… 우리는 자영업자가 많아요. 그리고 산업 구조조정이 지연돼서 한계기업이 많습니다. 복구 유럽하고는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것을 보고 생각을 해야지요. 노동생산성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억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정부가 아까 가상화폐 하듯이 우악스럽게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부총리님이 처음에는 이것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는 그냥 점점 전도사가 되어서 앞장서서 문제 해결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부총리님 책임총리시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는 아니지만 대통령한테, 청와대에다가 바른 소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실망입니다. 만약에 이 시장의 왜곡으로 인해서 정말 약자들이 더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우리 경제가 파괴되고 시장이 파괴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 부총리님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이언주 위원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우선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가 문제는 아까 햄버거 말씀하실 때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격을……

○이언주 위원 그래서 우악스럽게 또 시장에 개입해서 물가 못 올리게 하시려고 그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게 아니고……

○이언주 위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가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외식 프랜차이즈가 보통 연초에 가격을 조정하는……

○이언주 위원 그런데 그 오른 정도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거고, 어쨌든 간에 보면 다 자동화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무슨 자판기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주문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아니, 경제학 공부하셨잖아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 대통령께서 질책하셨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자리 질책한다고 나옵니까? 대책본부 만들면 일자리 나오나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일자리가 왜 지금 문제입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잖아요. 질 좋은 일자리는 혁신을 해야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혁신을 하는 정책하고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정부의 정책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혁신을 저해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혁신성장은 가고 나머지는 안 맞는 거예요, 지금은. 왜 모순된 정책을 2개를 갖고 갑니까? 그러면 이 사회안전망이나 복지 같은 걸로만 해결을 해 주고 혁신성장을 끌고 가야지요. 지금 부총리님 모르시는 것 아니잖아요. 모를 리가 있습니까, 경제학자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답변 좀 드릴까요?

○이언주 위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최저임금에 대해서 지금은 이렇게 전도사가 되어서 이러는데 처음부터 제가, 처음에는 이랬다저랬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정부에서 확정된 정책입니다. 저는 그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책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지금 혁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히려 제가 청문회 때부터 어떻게 보면 혁신성장의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언주 위원 지금 나오는 다른 정책들이 혁신

성장하고 저축되는 정책들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일자리와 소득중심성장과 혁신성장을 어느 한 쪽에서 놓고 보면 따로따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인해서 혁신을 제어할 거라고 하고 있고 또 거꾸로의 측면에서 보면 혁신을 해 봐야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양쪽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언주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 2개를 같이 균형 잡히게 봐서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언주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부는요, 정부가 할 일을 하세요. 복지에다가 투자를 하시든가 안전망에 투자를 하시든가 정부가 할 일을 하세요, 경제에 개입하시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오히려 더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잘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감사합니다.

○윤호중 위원 새해 벽두부터 어려운 문제들도 나오고 많이 힘드실 줄 아는데요. 아무래도 새 정부의 신년 새 정책들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경제부총리로서 경제정책을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서의 리더십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처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국민 경제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도 올해 1월부터 16% 이상 오르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우리 경제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오히려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최저임금을 인상한 효과를 더 높이게 되고, 자영업 또는 소상공인들이 우선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 내의 견해차라든가 이런 것을 조율하는 그런 리더십뿐만 아니라 경제생활을 하는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리더십을 좀 더 발휘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중 위원 얼마 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 화재사고가 연이어서 났습니다. 이 사고로 희생되신 사망자분들이나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확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이것을 빨리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화재사고의 경우에는 소방예산을 주로 썼고 소방예산 외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든가 그다음에 또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소방쪽의 소방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시급히 교체하는데 이런 예산을 사용해 본 전례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제천 화재 당시에 문제가 됐던 노후된 소방무전기 때문에 현장지휘자의 명령을 듣지 못하는 이런 일들로 피해자가 늘었는데 소방무전기 같은 장비를 교체하는 시급한 문제들의 경우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나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그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우리 소방인력이 법정인원에 한 1만 7000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과 금년도 예산을 통해서 5000명 넘게 증원하도록 되어 있고 2022년까지 2만 명 충원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비 중에서 차량이나 개인안전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는 저희가 많이들 말씀하신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해결을 했는데 지금 무전기라든지 훈련센터 등 장비 투자 이쪽은 재난특교가 금년에 작년 대비 제가 좀 많이 늘려서 한 6600억 정도 됩니다. 그쪽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다음, 한은 총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주요국의 통화 완화 기조가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적 완화 기조가 축소되고 있는 주요국은 미국과 중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미국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ECB(유럽중앙은행)이 점점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방침임을……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방침만 내놓고 있지 아직 축소를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규모도 사실상 조금 줄였습니다. 실제로 월 매입 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윤호중 위원 지금 보면 저희 바로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 기조를 지금 전혀 축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저희는 일본하고 많은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양적 완화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축소시켜 나가면서 발생하게 될 문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윤호중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화 기조를 결정하는 데 성장률, 물가 그리고 금융 안정 이런 것들을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성장률에 대해서는 다 열심히 하셔서 작년에 3.1% 성장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주로 세계 경

제의 회복세에 따른 수출 부문의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내수 소비로 불이 옮겨 붙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에 단지 그냥 명목성장률을 놓고 판단을 하시기보다 이럴테면 그것이 어떻게 소비로 연결이 되고 있는지 실제로 소비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이것이 투자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확충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정하셔야 이럴테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기조와도 발을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성장을 평가할 때 성장률 자체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장의 내용도 저희들이 잘 들여다보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다 유념해서 정책 운용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 경기 하남 자유한국당 이현재 위원입니다.

한은 총재님!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이현재 위원 어제 한국은행에서 경기실사지수를 발표했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78, 중소기업은 63, 내수기업은 71……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니까, 가장 큰 원인이? 한 가지 지적한다면.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이현재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원인이 뭔지.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작년 3/4분기에 아주 상당히 좋았던 것에 따라 그 후에 지표가 조금씩 기저 효과로 반락함에 따라서……

○이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이현재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총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4분기에 1.5% 성장하고 그

기저 효과로 4/4분기에……

○**이현재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제조업이 9.1%로 가장 높는데 원인이 인력난, 인건비 상승입니다. 지금 최저임금 16.4% 대폭 인상해서 경영안정자금 3조 원 준다고 정부가 나가서 홍보 아닌 홍보를 장관까지 다 나서서 하는데 신청을 한 것 보니까 전체 근로자 300만 중에서 0.76, 사업장에서는 0.95% 이렇지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 숫자보다는 높고요. 저희가 300만……

○**이현재 위원**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한 1.6%, 어제까지 신청한 것 같아요. 그 300만 중에서 저희가 지원하리라고 예상한 숫자를 모수로 했을 경우에……

○**이현재 위원** 그래서 지금 그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낮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보수를 받은 뒤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1월 달 봉급이 2월 중순·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이현재 위원** 그러면 2월 말 되면 몇 %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보다는……

○**이현재 위원** 대개 정상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2월 아니면 1/4분기 대개 몇 %…… 50%, 60%, 몇 % 오는 게 정상이라고 정부에서는 판단합니까? 그리고 기대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다다익선이지요. 다다익선인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일자리 안정자금은 신청을 하게 되면 소급을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가 2월에 신청하나 3월에 신청하나 1월부터 받거든요. 이런 원인도 같이 작용을 했었다고……

○**이현재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이렇게 1월 달에 2.6%인데 1/4분기 되면 대개 한 50%, 60%…… 전망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로 신청하면 좋고, 왜 신청을 안 하는지도 원인 파악이 정확히 안 되는 게 문제라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원

인 파악은 저희가 충분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워낙 간단히 말씀하려고 하시니까, 외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언론 보도에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자료 좀 보세요. 안산 시화공단의 어느 기업에 보니까 직원이 25명인데 20명이 최저임금이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시급, 잔업, 심야, 특근 해서 226만 원 받은 직원의 경우 금년 1월에는 261만 원, 4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40만 원의 부담이 늘어났는데, 최저임금을 다 적용할 때, 월 13만 원 준다고 이것 신청하겠습니까?

그리고 부총리께서 지난번 국감 때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할 때 4대 보험 기업만 대상으로 한다고 그래서 4대 보험 가입한 소상공인 기업이 절반이 안 된다, 그래서 그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 기업도 한다고 부총리께서 답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10인 미만은 4대 보험 가입 안 해도……

○**이현재 위원** 그런데 전부 다 하다 보니까 4대 보험 가입하면 보통 평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했을 경우에는 90% 지원해 줍니다.

○**이현재 위원** 아니, 지원 비율을 높인다고 하는데 여하튼 90% 하더라도 10%는 사업자한테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에 안 맞으니까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리고 30인 기준은 뭐가요? 왜 30인인가요? 왜 30인은 되고 35인은 안 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어느 선에서만 끊어야 되는 문지방 효과는 있는 것이고요. 30인 이상의 기업이 4대 보험에 한 90% 이상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으로 했고 다만……

○**이현재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돈 맞춰 놓고 얼마나 맞출까, 30인으로 잘라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재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뿌리산업이라

는 주물 같은 데는 다른 데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는 35인, 50인 되어도 대부분 최저임금이 아마 칠팔십 % 밖에 안 될 겁니다. 이런 데는 신축적으로 해야 되는데 30인 정해 놓고 세금으로 주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지금 이것 몇 년 주느냐니까 금년에 일단 주고서 차후에 보겠다……

정책이라는 게 예측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업은 한번 임금을 올리고 한번 사람을 쓰면 사업하는 한은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 지원받겠다고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알아서 하라? 그러면 내년도도 준다고 그리고 계속 줄 겁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금년에 주고 보자 이런 것은 조금 아니고요, 작년에 예산 할 적에도 3당 대표들과 협의하면서 합의 본 것이 금년 상반기에 최저임금의 효과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을 보아서 바로……

○이현재 위원 부총리님, 그 말씀은 지난번에 하셔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경제부총리는 실상을 알아서, 3당 원내대표 합의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속 가능한, 예측 가능한 투명한 정책을 해야지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것이지 금년만 기업 하고 내년에는 안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 좀 보세요. 이게 신청 안 한다고 전부 나섰어요, 지금 장관까지 나서서.

아니, 자금을 신청해 가라고 구걸, 사정하고 다니는 게 정부 정책입니까? 지금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1원 벌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뛰는 게 기업입니다. 이것 금년은 지원받는데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지 이게 불투명하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도 그렇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뭘 해라, 농림식품부는 농협 동원하고 이것보다는 정부에서도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EITC라든지 감세라든지 근본적으로 소득이 되는 지원정책을 보완 대책을 해야지 무조건 홍보한다고 이게 됩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현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업 죽고 나서 지원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조속히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요.

부총리께서 29일 날 상공회의소 가서 가지고 중국 슬라이드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신뢰度高시촌과……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 청년 창업자 카페촌을 비교하면서 우리 대학 졸업생들의 40%가 시험공부만 한다, 공무원 되려고 한다, 대졸자 정부나 중국처럼 되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하셨잖아요.

정말로 우리 공무원 뽑는 것, 정부 일자리,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로 공공일자리 80여 만 개 공무원 뽑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기업을 활성화해서 혁신해서 정말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되는데 부총리께서 상공회의소에서 강의하셨듯이 그런 경제정책 철학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나와서 근본적으로 경제가 사는 그러한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위원님께서 정부에 제실 적에 중소기업 정책의 수장으로 저희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을 보여 주셨는데 아까 보여 주신 화면처럼 구걸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결정된 상황이고 또 일자리 안정자금도 집행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간접 지원 방법으로 돌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걸 금년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우선 이 제도의 정착과 안정을 위해서 다 같이 뛰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고시촌과 중관촌은 정확한 말씀이신데 거기서 제가 말씀하는 포인트는 그와 같이 우리 젊은이들이 공직이나 안정된 직장으로 물리는 세대 그 자체에 대한 사회보상체계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데 공공 부문 일자리 문제는 워낙에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계속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관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위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에 대해 법무부하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 부총리다 이렇게 바깥에서 볼 때는 좀 통일적이지 않아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이런 부처 간의 엇박자라 할까 팀워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점을 좀 지적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부동산 재건축 연한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장관하고 부총리님하고 좀 다른 견해를 내셨더라고요. 김현미 장관께서는 1월 18일 주거복지협의체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시사하고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월 2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엇박자를 내셨는데 혹시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 부분은 사실은 국토부장관이 얘기한 거나 제가 얘기한 거나 큰 맥에서 같은 얘기를 했는데 듣는 분

에 따라서 또 일부 언론에서 그것을 부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본회의 마치고 김 장관하고도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같은 생각이거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배제하지 않고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그런 내용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김 장관이 분명하게 10년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구조적 안정성 문제가 없는데도 자원을 낭비한다든지 이런 정도 언급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부장관이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얘기한 게 아니라 큰 틀에서 같은 틀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또는 기자 질문에 서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국토부나 저희가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상화폐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관 위원 명칭은 가상화폐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가상통화로 했습니다. 가상통화로 부르겠습니다.

○김두관 위원 가상통화로 그렇게 했지요?

어쨌든 가상통화 거래소 문제하고 재건축 연한 연장과 관련해서 법무부, 국토교통부 또 청와대 홍보수석, 경제부총리 이렇게 부처 간에 조율이 안 된 것처럼 발표가 돼서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경제부총리께서 수장이시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국민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관 위원 청와대의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어서 이에 대한 답변도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통일되고 잘 정리된 그런 대책을 발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김두관 위원 준비를 잘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범부처적인 TF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어서 그 TF에서 정리가 되는 대로 정부 입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두관 위원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임시 방편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경제부총리님께서 중

심을 잡고 그렇게 항시적으로 정리해서 잘 발표하고 국민들께서 오해 없도록 하시는 게 경제부총리님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김두관 위원 공공기관 채용 투명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어제 김용진 차관께서 아침인가요, 발표를 해 주시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기대도 하고 상당히 놀라기도 했는데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보니까 지방공공기관은 74%, 공직유관단체는 78%가 적발된 데 반해서 정부운영 공공기관의 경우 53.4%가 불법 채용으로 적발이 되었다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또 기재부 산하 한 국수출입은행도 채용비리로 수사의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김두관 위원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유형들을 보니까 참 다양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말 실망이 클 수밖에 없는데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면접 전원이 고득점을 줘서 채용하게 하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인사위원회에서 특정한 채용이 부결되자 고위 인사 지시로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최종 합격을 하고, 한식진흥원은 경력이 없고 관련 서류를 안 낸 고위 인사 지인의 자녀를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특별 채용하고, 국제금융센터는 채용시험 미지원자에게 최종 면접 응시 기회를 다시 부여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같은 경우는 기관장이 특정한 채용을 위해서 면접관에게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라는 질문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이런 사례들의 발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특히 흡수저라든지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에서 지난 정부에 있었던 반칙하고 특권의 채용비리가 현 정부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제도 개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도 개선도 어제 일부 발표를 하시는 했는데 국민들께서 그렇게 확 와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

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공공기관의 인사비리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고, 그게지요, 우리 차관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오늘 또 제가 주재한 공운위에서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해서 확실하게 하겠고요.

○김두관 위원 장차관 워크숍에서도 대통령께서 장관님들에게 특별 당부를 드리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여러 가지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그중에서 일부 포함해서도 말씀이 계셨고요.

○김두관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지난 11월 10일 기재위 때 제가 부총리께 최저임금 대책으로 하고 있는 3조 원의 고용안정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관리가 되겠느냐 그 질문을 했을 때 김동연 재정부장관이 고용보험 DB 그리고 국세청 자료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면 관리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이종구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극히 초반이라서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임금을 그것이 작고 크건 간에 정하는 것은 기업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코스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임금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품의 가격 이런 것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정부가 고용보험 DB, 국세청 자료 이런 것을 활용한다, 그러면 국세청을 통해서 기업의 여러 가지 이익구조 이런 것을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소기업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괜히 13만 원 받았다가 세무조사나 당하고 또 이런 것 저런 것 다 노출돼서, 물론 4대 보험도 있지만 불편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날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이걸 공

극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은 동 직원들 아닌가? 이걸 누가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주무관서는 근로복지공단이고요.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4대 보험……

○이종구 위원 행안부 거기하고 동하고 하겠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주민센터에서는 또……

○이종구 위원 주민센터에서도 이것 한다고 그러던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오프라인으로 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게 접수할 때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중소기업들이 또는 영세업자들이 노출하기를 싫어한다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기업들이 내는 자료가 임금대장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았다고 하는 증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제너럴한 것들이어서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구 위원 그렇더라도 국민들이 항상 국세청을 생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 사람들은 국가 권력기관이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서 보험료를 내라 세금을 매기면 그것을 이 사람들은 부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업인들은. 그 부담을 부총리가 나서서 하여튼 제거해 주세요. 부담에 대한 것을 걷어 달라 이거예요. 그래야 하지,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런 걸 신청할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기본적으로 세금도 내고 사회보험도 가입해야 되지요. 그런데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리고 이것을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내년에도 계속 최저임금 올리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거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최저

임금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사항은 못 되고요. 다만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나 특정 연도에 목표를 두는 것은 신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 입장을 계속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아침에 우원식 대표가 ‘주요 OECD 국가들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복지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지금 OECD 국가가 이렇게 최고세율하고 부동산 보유세율을 인상한 나라도 물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린 나라도 비슷하게 많다고.

그리고 OECD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미국하고 영국이라고. 그러면 미국하고 영국이 최근에 소득세율을 올리고 보유세를 올렸어요? 이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당·정·청에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야당이니까. 그러니까 장관이나 세제실장이 민주당 위원들을 잘 교육시키든지 설명을 하든지 잘 하라고. 올리지도 않은 것 가지고 지속 가능한 복지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 세금을 계속 걷어야 되겠다 그리고 보유세도 인상하려는 어떤 논거로 삼아서 지금 국민들을 상당히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이 자료는 잠깐 말씀을 따로 드렸습시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낸 자료를 아마 인용한 것 같은데요.

○이종구 위원 그래서 아까 예산정책처 자료라고 그러는데 세제실장께서 하여튼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저한테도 주세요, 정확한 자료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저희가 해당된 나라를 보니까 핀란드, 이스라엘,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캐나다 이런 나라들인데 저희가 개별적인 것을 더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거기 보면 하락한 나라도 있잖아요, 내린 나라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하락한 나라는 이탈리아하고 터키 그러네요.

하여튼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보유세도 마찬가지로, 보유세

가 지방세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꼭 지방세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을 잘 구분해 가지고 정확하게 OECD 전 국가 것을 내라이거야, 전 국가 것을. 괜히 몇 개만, 오른 데만 추려 가지고 그걸 예로 삼지 말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어쨌든 소스를 저희가 인용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저희가 하여튼 쪽 잘 보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보유세 인상을 지금 검토한다는 것을……

장관도 이런 얘기 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이종구 위원 부동산 보유세 인상하겠다는 것을 얘기했느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인상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자의 과세 형평 문제, 그다음에 보유세와 거래세와의 조화 문제 또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이 정도로 얘기를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이종구 위원 노무현 정권 때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 아납니까? 그걸 지금 다시 보유세를 또 올려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세금이 11월 말 현재로 금년도 세수 목표가 다 찼다는 것 아니에요? 100%가 넘었어요. 12월 달의 보너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세금이 막 들어오는데, 초과 달성하고 있는데 뭘 세금을 또 걷으려고 난리를 치느냐 이거야.

정교하게 국민들을 설득하세요. 세금이 목표치보다 많이 들어오면 세율을 내리고 국민들 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게 맞는 것이지 거기서 또 올리고 말아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 한은 총재한테 질문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위원장 조경태 부총리님, 지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농민들한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때문에 농사 못 짓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월 한 200만 원 정도에 달하는데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위원장 조경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들의 채용을 감축시키고 또한 영농 규모를, 농사 규모를 축소시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분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외국인 근로자 월급 주고 나면 농민들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생활비가 안 나온다 이런 주장을 지금 충청남도의 어떤 영농조합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요.

도시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농업 쪽의, 농민들 쪽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작용에 대해서도 실태 파악을 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 부총리님,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뭘지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까 오전에 가상화폐 발표를 한다고 하는 기사가 났다고 하는데……

○정병국 위원 그게 1위였는데 지금은 ‘총선 때 보자’가 실시간 1위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방선거가 아니고 총선이요?

○정병국 위원 ‘총선 때 보자’ 이게 지금 온라인 상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또는 암호통화에 대한 정책의 오락가락함에 한마디로 화난 거예요.

그런데 부총리께서는 암호통화가 맞아요,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정부 내에서는 가상통화라는 말을 쓰기로 한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 가상통화의 개념 정의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게 아직 불분명합니다만 화폐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은 저희가 법정화폐나 화폐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정병국 위원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 정의가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안 내려져 있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이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병국 위원 좋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님은 가상통화의 용어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가상통화로 하는 것이……

○**정병국 위원**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정확한 법적 의미에 합의가 된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기는 하나 법적 근거 없이 발행주체가 없는 데서 발행되고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가상의 통화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데 지금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면, 총재께서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가치를 보장하는 데는 전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병국 위원** 지금 문제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에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아직도 안 되어 있고,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정부 어디에서도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합의가 된 게 없어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렇게 정리……

○**정병국 위원** 그러면서 불쑥불쑥 부처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 거래소를 폐쇄한다 하는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어떤 개념 정의도 없이 어떻게 폐쇄하고 어떻게 그것을 과세를 하고 또는 규제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네티즌들이 또는 국민들이, 청년들이 화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개념을 정의를 내려놓고 규정을 해 나가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은 심지어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반성해야 돼요.

지난 국정감사 때도 여러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때 답변들을 제가 되돌려 볼까요?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냐?’ 하는 질문을 했더니 부총리께서는 ‘좀 더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구체적 논의가 없습니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화폐로 보느냐?’ 그랬더니 총재께서는 ‘하나의 상품으로 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계획이 있느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느냐?’, ‘없다’……

가상통화에 대해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도부터, 10년 전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도 하지 않고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다 하면서 뜨겁게 달아오르니까 그제야 내놓는다는 것이 법무부장관은 난데없이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그랬다가 다시 거 뒤돌리고, 그러면 지금 총재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정부가 계속 부추기고 불 때고 있는 거예요. 급락하는 이런 사이에서 결국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선의의 투자자들, 큰손들은 다 대책이, 오히려 이걸 갖고 조작한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결국은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어쭙잖게 개념 정리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고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규제를 한다고 접근하게 되니까 예측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기존의 법률에 이걸 꿰맞춘다면 맞춰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념 정리도 안 됐는데?

이렇게 어느 누구도 몰라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명확하게 모르는 부분들은, 시급한 게 제가 또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암호화폐·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정부가 이런 일 해야 돼요. 정부에서 다른 정부 입법안 낼 게 아니라, 그 많은 인력·부처들 전부 다 뭐 합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위원실에서 준비하기가 벅차더라고요. 이런 걸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암호통화에 대해서, 가상통화에 대해서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해서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뒤야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규정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방기한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하루빨리 지금 가상통화에 대한, 지금 정부에서 가상통화로 쓰기로 했다고 하니까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리고 그

것과 관련된 준비를 저도 합시다라는 법률, 최소한의 것, 그러니까 기존의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을 제어하려고 하지 말고……

1분만 더 주십시오.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최소한의 것 그리고 나머지 결과를 주세요. 네거티브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것만 관리를 하시고 나머지를 다 열어 놓고 보는 거지요. 그러다가 진짜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선의의 투자자들의 더 이상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셨어요. 대통령께서는 일자리 대통령을 스스로 천명하시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 놓고 일일 체크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8개월이 지난 현재 보면 청년 실업률이 최악인 이러한 상황을 놓고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에게, 관계장관들에게 질타를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장관들을 질타할 문제가 아니다.

첫 번째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 문제다.

두 번째는 주무장관인 부총리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께서 쓰시고 있는 모든 정책들을 보면 최저임금 급등시킨 것, 근로시간 단축시키고 있는 것,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무리하게 압박하는 것 그리고 법인세율 인상을 무리하게 시키는 것, 무리한 탈원전으로 인해 가지고 급전 지시가 벌써 여덟 번째나 나온 이런 가운데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얘기한다면 일자리 창출하겠어요? 현장에서는 아우성입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주무장관이 정확하게 문제 지적을 하고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야단친다고 됩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총리는 뭐를 답변하신 거예요?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한 게 없어요. 하셔야지요. 부총리가 이것 전문가 아닙니까?

이 분야 하나하나 보면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국면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뭐가 우선순위인지 따져 가면서 하게끔 하는 게

국무위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답변을 좀 드릴까요?

○정병국 위원 예,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가상통화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중에 몇 가지 해당의 단초를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가상통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으로도 정립되지를 앓았습니다. 제가 만나 본 국제 인사들은 오히려 한국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책이나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오히려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서, 아마 3월 달에 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릴 적에 국제 간에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개념 문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런 개념도 없이 규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개념은 이게 상품이나 자산이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한국의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 또는 투기의 과열 측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가야 되겠다는 그런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부처 간에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거래소 폐쇄 등 얘기가 나왔던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섬세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위원님들이 암시만 하셨는데 가상통화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상통화를 어떻게 볼 것이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나 또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잠재력이 아주 많은 기반기술로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TF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해서 과세 문제나 이런 것을 짚하고 있고 해외 출장까지 보내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는 정 위원님의 충

정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기본적인 이해를 같이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고, 이 문제가 여러 가지 경기적인 측면도 있지만 구조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적인 측면이나 빨리 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산업구조 문제나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려 두 트랙으로 이 문제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청년 실업률이 사상 가장 높았지만 또 청년고용률이 조금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저희가 심각하게 보고 주신 말씀을 잘 유념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과열이 났다라고 해 가지고 시장을 정부가 통제한다는 생각은 갖지 마세요. 시장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내버려 두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정부가 선불리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게 되니까 왜곡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인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자칫 정부가 과욕을 부림으로 인해 가지고 근본적인 기술도 망치고 기술 변화도 망치고 변화를 막는 현상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선의의 투자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한다 이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게끔 어떻게 관리할지 최소한의 것만 하라 하는 게 현장의 요구이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어요. 명심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가상통화 문제는 우리 통화처럼 중앙 오소리티(authority)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거기에 있는……

○정병국 위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아니,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정병국 위원 지금 통화다, 화폐다 이런 개념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아닙니다. 제가 중앙……

○정병국 위원 기존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중앙 어소리티가 없어서 문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특성상 그런 것들로 인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와 같은 투기 현상이 아주 비이성적인 상황을 떨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예의 주시하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님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 김종민입니다.

부총리께 저도 가상통화라는 용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통화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볼 문제가요, 근대국가의 헌정 원리에 보면 보충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대국가는 국가가 국민을 만들어 낸 게 아니고 국민이, 그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국가를 만들어 낸 거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 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되는 일을 공공과 국가라고 하는 제도가 감당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근대국가의 헌정 원리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개인 간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 국가가 항상 개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둘이 서로 다툼이 있거나 충돌이 있을 때 둘 사이에서 개인의 자유와 책임하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그게 우선이지요.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공동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국가와 행정의 개입하는 거지요.

저는 지금 이 가상화폐 문제를 볼 때 사실 근본적인 근대국가의 보충성의 원리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까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국가의 공인이라는 것을 화폐의 중요한 요건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국가의 공인이 필요한지, 원래 뿌리는 국가의 공인이 아닌 것은 화폐의 교환 기능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의 공인이 필요했던 것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런 국가나 공공의 공인 과정이 모두에게 이익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지금 가상화폐를 들여다보면 국가의 공인 기능이 없이도 소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적 질서에서 관의 공인, 국가의 공인이 필요하지 않고도 개인과 개인 간의 교환이 자유롭게 성립이 되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술 발전 단계로 접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원래부터 성경책에 ‘화폐는 국가가 공인해야 된다’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 자유와 책임 범위 내에서 서로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거래 수단으로서 화폐가 만들어진다면 사실은 근대국가의 보충성의 원리에서 본다면 이 문제를 단순히 우리가 이것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다.

이런 문제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에 부작용을 낳느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몇 가지 질문 좀 드려 볼게요.

일단 블록체인하고 가상통화를 궁극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은 이론이 부분한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폐쇄형 같은 경우는 분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중론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방형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도 있고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숲이나 그런 속에서 가상통화라고 하는 나무가 크게 자랐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설명하셨다시피 블록체인이라는 것의 중요한 특징 중에 투명성과 분권성(decentralization)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비롯되는, 앞으로 이 산업에서의 중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는 서로 영향을 주면

서 가상통화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지금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복잡한 심정으로 보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산업적 측면이나 앞으로 봐서 긍정적이고 오히려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도 보고 있고, 다만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상통화로 인해서 빚어지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더 큰 위험 요인이나 또는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같이 병립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김종민 위원 저는 그건 동의하는데요.

정부 발표를 놓고 보면, 블록체인은 육성하고 지원하되 가상통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없애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많이 말씀하실 때 제가 보기에 블록체인은 결국은 암호 관련된 기술, 네트워크 기술인데 이 암호를 유지해 나가는 게 결국 서로 간의 신뢰거든요. 상호 신뢰를 교환하는 건데 이 신뢰의 교환 자체가 기본적으로 화폐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가상화폐는 분리시킨다 이런 관점이 현실적으로 성립되기가 쉽지 않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주신 그 표현을 저도 썼습니다. 마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한 기반기술의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필요하면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돼 있는 가상통화에 있어서의 부작용 내지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합리적인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민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그 점에서 두 가지 일단 급한 문제 중 첫 번째가 지금 거래소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소가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의 자유와 책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그 자유와 책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결과가 개인과 공동체에 피해를 주면 이 문제에는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거래소의 승인, 거래소의 관리 문제,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그냥 놔두고 ‘개인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자유롭게 했으니 책임져라’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거래소에 대한 관리 문제, 가상화폐 자체를 우리가 배제하거나 아니면 없앨 수는 없다면 이 거래소 문제에 대한 관리 차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피해들을…… 갑자기 거래소가 문제가 돼 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요. 피해가 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과세 문제가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세 문제가 있는데 과세 문제는 결국 양도소득세하고 거래세 이 두 가지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 실물 간의 이동보다는 약간 투기적 성격, 투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거래세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래소에 대한 국가의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가치의 교환을 어떻게 우리가 과세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려서 이 문제를, 가상화폐를 우리가 없애거나 탄압한다고 해서 없어질 문제가 아니라 한다면 이 문제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빨리 국가가, 행정이 대답을 해 주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가상통화를 저희가 없애거나 탄압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고, 물론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거래소를 취급업소라고 통일해서 부르기로는 했는데 취급업소 문제는 지금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 규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27개인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가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급업소 문제는 정부 안의 TF에서 지금 다루는 가장 빨리 얘기를 해야 될 주제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세 문제는 이 문제를 아까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성격의 규정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세로 했을

때 양도소득세나 또는 일종의 기타소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거래세 문제 또 법인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급업소나 또는 실제로 가상통화를 거래한 법인이 수익이 났을 적에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취급업소 문제는 정부 TF에서 바로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과세 문제는 기재부 중심으로 국제 사례 또 일부 저희가 해외까지도 직원들을 출장시켜서 쫓파악을 하고 있는데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동향과 정책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상화폐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질문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가상화폐가 지금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투자자도 그렇게 많지 않다가 일정 시점, 그렇게 먼 시점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지난여름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 전체에,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많은 사안으로 와 버린 겁니다.

문제는 초기에 이 문제를 각 부처가 개별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다가 지금 문제가 이렇게 커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금융위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에 관한 위닝을 계속 주다가 그래도 금융상품은 아니다, 금융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그러면 누구 것이냐, 거래는 일어나고 또 일부 시장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기니 이 질서 바로잡고 여기에 또 일부 사기성 거래가 있으니 이것은 또 법무부가 나서야 되겠다, 그러다가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 문제까지 들고 나오다가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 사태로 왔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아까 거래소의 문제 또 거래 투명성·신뢰성 제고의 문제, 안전

성 문제, 그다음에 이것이 곧 세금의 문제로 옵니다. 꼭 설명을 하셨지만 어떻게 세금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가상화폐가 뭐냐, 어쨌거나 경제현상은 현상인데 뭐냐?ㄹ

그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또 해외 유출입이 됩니다, 어떤 형태든지. 이게 외환에도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보면 전부 기재부가 갖고 있는 업무 소관이다. 그래서 초기에 부처의 엇박자 조율 안 된 것 그것 지금 제가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 되니까 나중에 급해서 총리실에서 지금 잡고 일단 조율한다고 나섰거든요.

지금이라도 부총리께서 이것은 경제 문제로 전체 과학기술에서부터 금융,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새로운 제도권으로의 편입과 관련된 세금의 문제, 외환의 문제 등등 종합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재부가 빨리 나서서 어떻게 하면 제도권 내에서…… 저는 제도권 내에서 이것을 대단히 크게 양성화하고 활성화시켜라 이런 측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빨리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이것을 안착시켜 나갈 것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 정리를 하는 역할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정리를 해 주고 입법화, 정리할 것은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추경호 위원 일단 기재부에서 우선 중심에서 하실 것인지 그것만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20초만 말씀드릴게요.

금융위에서 하다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법률 문제가 있어서 국무조정실이 하게 됐습니다.

○추경호 위원 예, 그것은 부차적으로 오는 문제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래서 총리실과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경제 문제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추경호 위원 그것은 부총리께서 지금 여기의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계시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부도 많이 되어 있고 고민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정리해 주시는 게 앞으로 시장의 혼선을 줄이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도 훨씬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총리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추경호 위원 그리고 지금 가상화폐 실명 거래 유도한다고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추경호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로 거래에 참여하고자 하는 게 사실상 일단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은행의 여러 가지 행태 때문에 그럴 텐데 이것도 빨리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가지고 계좌 개설하는데 여기에 은밀한 소득 증빙 이런 것을 다 확인해 가면서 일종의 불법자금 추적하듯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 정상적인 계좌 개설 정도의 절차를 거치고 이것을 길을 터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투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장이 걱정해야 될 부분은 그것은 별도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 실명 추진을 하니까 이것이 실제로 신규 투자가 울스톱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 부분은 금융위에서 실명제로 해서 같은 은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실 것이고요.

○추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은행에서, 현장에서 너무 뜨겁게, 소위 말하면 오버액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중간 균형을 찾아 가면서 얼마든지 신규 거래도 더 주고 이렇게 유도해도 되는데 굉장히 강하게 지도가 나오니까 현장에서는 사실상 일단 신규 개설은 안 되는 것처럼 일단 초기 반응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것은 정부가 원하는 아마 그게 아닐 겁니다. 일반적인 정상 절차에서 계좌 개설하라 이렇게 아마 유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 시장은 지금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부총리께서도 금융위원장하고 한번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잘 알겠고요.

다만 자금세탁 방지하고 범죄인 게,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추경호 위원 그런 것은 하시라고요. 우리가 일반 거래 가지고 있다고 자금세탁 방지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하면 된다고요, 다.

그다음에 ICO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추경호 위원 ICO가 지금 현재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지금 시장 불확실성이 있는데 ICO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다 ICO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 보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 요건을 설정해 놓더라고 ICO 길도 터 주셔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면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 안에 내부 스태프하고 전문가들하고 금융위하고 이것 전향적으로 보시지요.

저는 ICO를 IPO와 물론 동일하게 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IPO로 오라, ICO는 안 되니까 원하면 IPO로 오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ICO의 길도 나름대로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건을 설정하시되 ICO의 길도 터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1차로 우선 정부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도권 내에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되면 빨리 정리를 해서 가지고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중심에서 기재부가 해 주셔야 된다.

시장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안 되고 굉장히 불확실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은 부총리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유념을 해 주셔서 가지고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심을 잡고 빨리 일차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정부 내의 통일된 일관성 있는 그런 예측 가능한 정책을 이 부분에 관해서 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최저임금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회나 외부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의 인상 자체를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과도하게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또 부작용이 있으니까 국민 혈세로 민간기업에 임금 보전을 하겠다고 나선 이 애초부터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지금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세금 공짜로 받으라고 거리로 나선 공무원들’ 이런 지적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빨리 현장에 있는 문제를,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들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빨리 보정이 가능한 부분은 빨리 보정을 해 주시고,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내년엔, 그러니까 내년분에 금년 인상분을 또 지금과 같이 급격하게 할 것이냐, 재정부 지원은 금년에 3조 했는데 현상 유지하는 것만 해도 3조, 3조 계속 들어갈 판인데 또 추가적인 알파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걱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대책을 하면서 시장 친화적인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왜 뜬금없는 카드 수수료 이런 대책이 왜 자꾸 나오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카드 수수료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카드회사 아닙니까? 왜 정부 대책에 세금을 쓰는 것처럼 자꾸 카드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가 왜 나오고 정부 삼킬 것처럼 왜 나오느냐고요?

우리 헌법 23조에 사유재산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엄연히 주주, 민간 주인이 있는 회사예요. 카드수수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부가 보고 권고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정부에서도 자꾸 얼마 준다, 어떻게 인하한다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시장에서는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 보호, 시장질서라는 것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 자꾸 의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념을 해 주셔야 된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주신 말씀들 취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주신 방향

과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과 많은 부분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3조 지원이 내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자리 안정자금 이 한시적으로 가되 여러 가지 EITC를 포함한 간접 지원까지 포함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만 한시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설정할지 또 연착륙 방법은 어떤 것으로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이것을 안정화시켜야 될지를 금년 상반기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상황을 보면서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지난해 연말에 여야 합의로 추가적인 지원, 그러니까 금년에 이루어진 재정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 이상 지원은 없다 하는 것 기억하시지요, 약속한 것?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것은 금년에도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임금 인상은 없고 거기에 추가적인 재정 보전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3당 대표 간에 합의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연착륙하는 방안을 상반기 끝날 때 내기로 했고 그리고 3당 원내대표께서는 금년에 지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님, 이주열 총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최근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두 기관의 장께 확인을 먼저 하고하겠습니다.

서지현 감사의 증언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매우 심각하고 충격적인 그런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그전에 없었던 일이 아니라 굉장히 깊게 넓게 퍼져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 상하관계가 분명하고

또 평가권을 간부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일수록 아주 도착된 성문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이런 것들이 더 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국민들의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보고 싶습니다.

우선 두 기관이,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이런 지극히 잘못된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어떤 노력 또는 계획 이런 것을 갖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많은 여성분들께서 지금 보도된 것으로 보면서도 유사한 경험이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내에서 이런 증언들을 수집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김동연 부총리님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례적인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신고를 받거나 하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어쨌든 과거에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을 앞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교육이나 직장 문화나 이런 개선에 힘쓰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총재님.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한국은행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릇된 어떤 성문화가 혹시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철저한 제도적인 장치도 있고 교육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이 사건, 이번 이 증언이 그때 당시 몇몇 관여자들의 잘잘못을 가리고 별하고 하는 차원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를 한번 성숙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할 정도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정말 국민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의 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평창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과거에 몇 차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자료 화면을 보시면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통일과 관련된 경제적 효과 분석이 경쟁적으로 발표됐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050년 미래상’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유엔 세계인구전망보고서와 또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인구는 7350만 명으로 세계 26위가 되고 명목 GDP는 세계 8위, 6조 500억 달러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국력지수는 세계 10위 정도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미래상에 대한 전망이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통일비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요즘에 ‘통일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지 않느냐, 과연 꼭 통일을 해야 되느냐’라고까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당시에 통일연구원 그리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조선일보의 의뢰로 낸 통계입니다. 통일연구원 보면 비용이 3600조, 혜택은 6794조,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비용이 3100조, 혜택이 4900조, 그러니까 통일비용은 최소 3100조에서 최대 4700조까지, 혜택은 최소 4900조에서 최대 6800조까지 예측이 됐는데요.

저 예측들이 얼마나 정교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보다 혜택이 크다는 데는 두 기관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일보가 저 자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도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총리께서 저에 대해서 평가하시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대학 총장 할 적에 통일연구소를 학교에다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봤는데 이 자료 외에도 혜택이 비용보다 크다고 하는 자료는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고 또 평화 올림픽이 결국 경제 올림픽으로 성공되면 이게 남북한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게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과장이거나 이런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 G20 정상회의의 경제적 효과를 한국무역협회는 31조, 삼성경제연구소는 24조로 추산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평창 올림픽은 사실은 G20 정상회의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 기간에서나 또는 세계……

1분만 더……

세계 미디어에 노출되는 그런 정도로 따져 볼 때 그것보다 훨씬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산업연구원은 총생산 유발 20조, 그다음에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 효과가 약 6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수출이 23.5% 늘 것이고 총교역량이 31%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추산인데, 물론 이 추산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의 소지는 있다 하더라도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경제 올림픽으로 성공될 때 우리 경제에 가져다 줄 효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홍보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죄송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광온 위원 제가 이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금년도 경제 운용에 있어서 평창 올림픽이 주는 경제적 효과가 자못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북경을 가는데요, 한중 경제장관회담을 위해서. 그것도 평창 올림픽의 여러 가지 관광 또는 관람 등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효과를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 경제팀 내에서 다른 부처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경제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북경 가시면 정상급 회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경제장관회담입니다.

○위원장 조경태 거기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화제를 다루어 가지고요, 미세먼지가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중국의 고위 관계자들한테 그 피해 실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대로 평창에 대해서도 잘 알려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8개 부처하고 같이 가고 제가 수석대표로 가는데요. 산업부, 금융위, 문화부, 외교부 이렇게 쭉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인 의제를 다 다룰 계획에 있고요. 또 공식 회의 외에 비공식 회의에서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관광 문제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특별하게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중국 측과 얘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지금 중국 가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오늘 밤에 갑니다.

○박주현 위원 2016년 6월 이후에 한 1년 반 동안 사드 문제로 모든 그런 협력 관계가 중단됐다가 이제 재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새만금의 경우에도 2016년 6월에 한중 간에 경협특구 추진 방안에 대한 실무 협의가 진행되다가 그 이후로 지금 1년 반 동안 이 사안은 딱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새만금 관련한 한중 경협특구 추진에 대해서도 이번에 논의를 하시게 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이번에 저희가 한중 산업단지 활성화 협력이 아주 중요한

의제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새만금, 중국은 연태·염성·해주시 해 가지고 지금 산업과 투자협력 섹션에서 저희가 새만금 협력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잘 하고 오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리고 앞으로 상반기 중에 차관회의도 아마 진행이 될 텐데 그것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리고 새만금 관련해서 그동안 30년 지나도록 한 12%밖에 매립이 진척되지 않아서 공공 주도 매립을 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고, 그런데 공공 주도 매립, 그러니까 공공 매립으로 150억을 신청했는데 정부에서는 새만금공사를 설립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공사 설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설립에 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올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 설립이 되면 예타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예타에서 4개월을 2개월로 신속 추진하는 그런 제도가 기재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해서라도 올해 안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동감합니다.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저희가 아마 여름에 공사 설립을 목표로 지금 관련 절차는 기착수를 하고 있고요. 예타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선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고, 선정이 되면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4월 이내에 부동산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을 팔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수석 할 때 부동산 문제로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서울과 경기도 일부, 부산 일부, 세종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세율도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85㎡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또 양도소득세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0년까지 있으면 70%까지 공제를 해 준 다거나 임대소득세도 경비율을 70%까지 올리고 그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폭 감면해 주고 이런 엄청난 혜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의 85㎡, 그러니까 전용면적 85㎡면 한 35평 정도 되거든요. 33평 내지 35평형입니다, 흔히 말할 때. 전용면적이기 때문이에요. 강남의 35평 아파트, 한 15억 정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아파트를 한 10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1채는 자기가 살고 나머지 9채는 당연히 임대를 주고 있겠지요. 그 사람이 지금 그것을 팔려고 할까요? 임대사업 등록만 하면 취득세·재산세 50% 깎아 주고 양도소득세도 8년 50%, 10년 지나면 7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고 임대소득세도 엄청 적게 나오고. 그것을 오히려 8년 될 때까지 소유를 하기 위해서 더 계속 열심히 보유를 하지 않을까요? 절대 안 내놓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의 부동산 거래 건수를 보면 예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적은 건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주택자가 주택을 붙잡고 안 내놓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의식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강남에서 집을 내놓는 게 집값이 올라 가지고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게, 그 히스토리를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는 계약갱신청구권, 월세상한제 적용 등등 해서 굉장히 강한 규제를 주고서 그 대신 세금을 감면해 준다, 공공 임대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임대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서 조세 감면을 한다라고 처음에 시작이 된 건데요. 차 떼고 포 떼고 규제가 다 없어졌어요. 갱신청구권도 없고 월세상한제도 없고 그냥 남은 게 8년 임대 5% 인상만 남은 건데 8년 임대라는 것은 그냥 8년 소유를 사실은 강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4년째, 5년째 팔고 싶어도 8년을 소유해야 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절대 팔지 않게 만드

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게 어느 새 이상한 제도가 돼 버려 가지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중과하는 것하고 완전히 자기모순이 되는 오히려 다주택을 권장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금 변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조세소위 때 제가 이것을 3년 연장한다고 해서 절대 안 된다, 없애라 이렇게 했는데 그 타협안으로 1년 연장하고 1년 후에 이것을 없앨지 보겠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세특위에서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는데 이번에 임대주택,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목적이 임대소득세를 내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1분만.

왜냐면 제가 국세청장님 등등에게 모두 정확히 확인한 사실입니다. 등기부등본, 주택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들, 월세 세액공제 자료들, 모든 자료가 다 완비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제라도 종합부동산세처럼 부가세 형식으로 신고안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료가 완비돼 있다, 언제라도 임대소득세 과세를 할 수 있다, 등록 전혀 필요 없고, 이런 상태라고 저는 몇 번이나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세를 내게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전혀 맞지 않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는 것과 완전히 100% 자기모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주택을 권장하는 제도로 지금 변질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 바로바로 좀 점검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주신 제안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꼼꼼히 보겠습니다. 금년에 부동산 임대 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텐데 우선 곧 구성될 재정특위에서 볼 거고요. 또 어차피 국회에 저희 세제 개편안 낼 적에 같이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준 위원 부총리님, 아까 업무보고에서요, 11페이지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 혁파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서 신사업·신기술 등 혁신적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규제프리존법의 대안으로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한 4대 패키지 법안이라는 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환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같이 중복은 되는데요.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업무보고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규제샌드박스 등을 포함한 규제 혁파는 그것보다 더 넓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앞에 말씀하신 부분집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기준 위원 그런데 이게 규제프리존법이 기존에 나온 것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라고 보면 지금 규제샌드박스는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 규제샌드박스 추진 시 규제 완화에서 소외되는 취약지역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신산업이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풍부한 서울이나 경기, 이런 수도권 위주 중심으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 격차 완화 차원에서 기존 규제프리존법 입법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또 우리 문제인 정부의 정부 정책 기조에도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요,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 완화 사업으로 지정한 관광산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신기술이나 신서비스산업 영역에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 추진이 참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소외되고 잘못되면 취약지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마련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무슨 포인트를 지적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

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규제샌드박스는 이제…… 새로운 신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아예 두지 않고 좀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규제샌드박스이고, 규제프리존법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상이한 예가 있기 때문에 신산업 분야에 별로 해당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제프리존법도 있지만 또 지역특구법도 아까 4대 대체입법 중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특구법에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그런 산업을 지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원도의 관광이라든지 하는 산업에 또 저희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기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가상통화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30일부로 가상화폐 거래계좌에 대한 실명제 실시를 통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기준 위원 사실상 신규 거래가 지금 허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가상화폐앱을, 거래소앱을 깔 사람들이 한 3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그러고, 그중의 한 육칠십 % 이상이 이삼십 대라고 하는데 그러한 가상화폐에 대한 현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가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취급업소가 27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의 한 4개 정도가 아주, 뭐라고 할까요? 제대로 운영되고 큰 저기라고 하더라고요. 그중의 3개 취급업소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최근에 저희가 일일 거래금액이 지금 한 5000억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모로 하고 있고요. 투자자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충 한 300만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것은 너무 길어지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기준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문제가,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게 블록체인 기술의 분리가 가능성에 대한, 아까 부총리님께서도 기술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블록체인 참가자들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블록을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면 그러한 형태에서 블록 생성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금 가상화폐, 통화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활성화시키는 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또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가상통화가 연료다, 이것은 연료다, 그 기술을 발전시키는 에너지다, 이러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총리께서 숲과 나무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 주셨는데 아마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서 블록체인의 개념 정의를 그렇게 내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좌 실명제를 통해서 이게 제한적으로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연착륙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종합TF를 만들어서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어떤 대안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까 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사회·법률 문제에 있어서 경제 문제가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많이 엄격 있기 때문에 총리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기준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중국과 같이 극단적으로 거래소 폐쇄가 아니고 일본처럼 연착륙을 시도하는 부분이라면 이것이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과세 문제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세에 대해서는 지금 부가세, 양도소득세, 거래세…… 아까 법인세까지도 부총리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하는 고위 관계자들 보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양도세의 원천징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부총리님,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과세 과목하고 그다음에 세율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은 제가……

○심기준 위원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은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할 거냐 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과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특히 외국 사례도 많이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특히 과세 문제, 나중에 질문하신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세목 또 징세 방법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다 각도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기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외국의 예를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한국의 가상화폐시장은, 가상통화의 시장은 어쨌든 일본의 경우 90% 이상이 비트코인 하나에 집중이 돼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가상통화 그런 부분들이 90%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국은 참 특수하게 형성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방법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 정의나 제재나 과세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나름대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외국의 예를 하려고 하면 시장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게 우리가 채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 코인 자체가 중국 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은 중국 게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원화는 다 중국으로 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국부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상화폐를 더 이상, 여기에 대한 것들을 대책을 늦추면 안 된다.

그래서 부총리님, 어쨌든 이것이 우리 주식시장의…… 한국만 거의 한 80% 이상이 이 작은 가상화폐시장이 몰려 있는, 주식시장의 80%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5%나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는 굉장히 크게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재부가 어쨌든 중심이 돼서 대책을 빨리 논의를 해서 내놔야 하는 바람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사례를 저희가 그대로 카피할 필요도 없고요. 외국의 사례를 저희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보다 조금 앞서서 아주 종합적이진 않더라도 정책을 펴 온 나라들이 있거든요. 일본이라든지 또 중국은 좀 과격하지만 이런 나라들도 있고요. 또 미국처럼 선물거래소에 일부 하는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하고.

또 과세도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국제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참고할 뿐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특수성과 저희 시장의 상황에 맞도록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고요. 총리실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기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영 위원 부총리께서 대통령실에 일자리상황관이 있고 또 일자리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이 대통령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박준영 위원 그러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박준영 위원 최근에 내각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다,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위원회도 또 TF팀을 만들고, 기획재정부도 또 지금 청년일자리대책본부를 만드셨지요? 저는 그걸 왜 좀 미리 하지 않았나 싶어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가 중요하다 하면? 위기가 오고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제가 작년 기록을 찾아보니까 8월 28일이예요, 그때 우리 기재위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면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또 자꾸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그러고, 이미 빌딩의 임대료는 다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소상공인들이 죽는다, 소상공인들이 흔들리면 나라 경제도 고용도 흔들릴 것이다, 중소기업들 삶이 무너지면 나라가 안정하지 않다, 거

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을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박준영 위원 그래서 그때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대책을 내셨는데 지금 일인당 13만 원씩 주는 걸로 했던 말이지요. 그때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라리 기업에 호소를 하고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 그러면서 세금 감면을 하든가 또 간이과세제도를 더 활용을 하고 또 4대 보험을 지원해서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느 나라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을 받지 않고 직접 지원으로 갔어요. 직접 지원 받아 보니까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전체 1%도 안 되지요, 1%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어제까지 1.6%입니다.

○박준영 위원 1.6%가 됐습니까,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박준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이건 간에 선진국을 가면 미리 그 정책의 효율성을 직접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테스트를 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80% 정도 확신이 들 때 그 정책을 추진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시면 확 몰리고 또 뭘 하나 해 놓고 부작용이 생긴다고 그러면 또 그것 땀질 처방하고 이러거든요.

지금 기업 하는 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금방 말씀드렸던 최저임금이 상승될 때 금리는 올라가고 임대료 올라가는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또 그 후로 비정규직을 제로화하자 또 근로시간 단축하자 그리고 노동정책도 어쨌든 굉장히 유연하게 해 가는 그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노동자들도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 중에,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그 삶이 행복해야 되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선조들 생각하면 너무 어렵게 살다가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잘사는 시대를 맞았다, 이것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고용을 근본적으로 국가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 좀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것은 논의를 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소상공인들이 지금 제일 어려워 가지고, 제가 가서 보면 다섯 사람 고용했던 데가 세 사람으로 줄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그대로, 고용자들에게 돈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한테 바로 금융 조건을 좀 완화하는 정책도 한번 내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제2금융권으로 몰리기도 하고 제3금융권으로 몰리기도 했던 말이지요. 그래서 하여튼 소상공인들한테 뭔가 좀 이 어려움을 같이 견뎌 내도록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고용을 만들어 내는 데는 기업입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우리 같이 사람은 잘살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제도를 하면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 그렇게 해서 좀 설득을 하는 작업을 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하도록 그리고 고용을 좀 더 늘리도록, 많은 정책이 있다고 나는 봐요. 정부가 말로만 해서, 관리들끼리 회의만 하고 있으면 뭘 해요. 기업들한테 가서 호소도 하고, ‘우리 같이 극복하자, 지금 극복하면 잘사는 대한민국 정착시킬 수 있다’, 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그런 노력을 좀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좀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위원 그러시고, 지원하는 문제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고용주한테 세금 감면하거나 간이과세를 활용하거나 그다음에 4대 보험 지원하는 것이나 간접적으로 바꾸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식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하고 뭘 좀 검토하고 있으면 안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고요. 제가 일관되게 작년부터 또 오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항구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시적인 범위 내에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 방향은 저희가 이번 상반기 중에 상황을 보고하겠지만 아마도 EITC라든지 또 지금 위원님이 주신 몇 가지 대안을 포함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서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나 일자리 안정자금의, 금년 상반기 중에 이것을 저희가 좀 면밀히 보면서 일부 보완도 하겠지만 앞으로 갈 방향은 그런 방향에서 소프트랜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위원 됐어요.

어떻든 좀 충격을 줄이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더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민 위원 유승민 위원입니다.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이 중에 정부가 쓰는 용어는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가상통화입니다.

○유승민 위원 가상통화라고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TF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유승민 위원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화폐’라는 말을 저희가 이제 안 쓰는……

○유승민 위원 이게 처음 주무부처가 법무부가 된 것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유승민 위원 주무부처를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는데요? 청와대가 정합니까, 아니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 것은 국무총리실에서 주관 이 됐고, 지금은 국무조정실이 주무부처가 돼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위원 어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국무조정실입니다.

○유승민 위원 국무조정실이 가상화폐의 주무부처입니까, 지금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경제·사회·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승민 위원 그러면 그게 법무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주무부처가 바뀐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런 것으로 제가……

○유승민 위원 그런 거네요,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민 위원 법무부가 주무부처를 할 때나 또 국무조정실로 바뀔 때나 우리 부총리 의견은 뭐였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원래 이게 16년도에 금융위가 TF 구성을 했었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리고 금융위든 법무부든 국무조정실이든 저희가 중요한 멤버로 계속 참여를 했었고요.

○유승민 위원 저는 기재부나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가 안 된 게 너무나 이상하고, 도대체 이 정부 안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길래 가상통화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법무부가 앉아 가지고 주무부처가 되고 또 국무조정실이 주무부처가 됐다는 것도 이상해요.

이 부분은 저는 부총리께서 목소리를 내서 가지고, 경제부총리시니까……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가 돼 가지고 거기에 국무조정실이 온다든지 법무부도 온다든지 그것은 가능한데, 아니면 기재부가 하시든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안 그래도 위원님, 그 질문이 추경호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주셔서 가지고 제가 답을 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국무조정실은 총괄부처고요, 지금 주무 역할은 금융위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과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봤을 적에 기재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가 계셔서 제가 총리실하고, 저희도 동감한다고 얘기를 하고……

○유승민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렇게 혼란이 있기 전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에, 법무부장관이 직접 마이크 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취소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지금도 거래소 폐쇄에 대한 걱정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는.

거래소 폐쇄는 앞으로 없는 겁니까,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나중에 얘기를 했더니 법무부장관도 그런 뜻으로 하신 얘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기자 간담회 때……

○유승민 위원 그러면 그분이 한국말을 못 하나?

앞으로 거래소 폐쇄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거래소 폐쇄는 고려 안 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법무부장관이 얘기하신 다음날 저는 그 옵션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거래소 폐쇄가 됐을 경우에 생기는……

○유승민 위원 그러면 아직도 거래소 폐쇄의 옵션이 있는 겁니까? 이 부총리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위원 아직도 있구먼요, 그러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다만 그런 문제가, 이것을 지금 아직 정부에서 공식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인 답을 요구받으면 제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다만……

○유승민 위원 그러면 거래소 폐쇄를 포함해서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구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얘기 뒤에 쓴 얘기가 언론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음성적인 거래나 외화 유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저도 1만 원 최저임금 공약해 가지고 중소기업 신년교례회에 가서 반성을 했습니다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시장 점검을 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충격을 완화하고 연착륙한다 이랬는데 금년 상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2019년 최저임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대통령이나 부총리나 이런 중요한 분들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최저임금은 무조건 대통령 공약대로 한다. 근로시간 단축도 대통령 공약대로 한다’, 올해 초에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최저임금은 그냥 고다. 근로시간 단축도 고다’ 이 시그널이

계속 가니까 저는 일자리시장, 노동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착륙을 진짜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 입으로, 부총리 입으로……

2019년 최저임금은 6월 29일인가 그때 정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2019년 최저임금은 예컨대 동결하겠다는지 500원 이내로 인상폭을 아주 줄이겠다는지 이런 발언이 나오면 저는 직원을 채용하고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고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근로시간 단축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올 신년 초에 대통령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이 두 쪽 나도 이것은 그냥 간다는 거니까 저런 고집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는 장관들이 길거리 나가 가지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라고 서류나 들고 다니고, 이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진짜 속도 조절을 해 보겠다 그런 의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제가 그 얘기를 사실은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승민 위원 그것을 좀 세게 하셔야지 시장에 통하실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얘기한 것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유승민 위원 아니요,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지만 그 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그 의견을 결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유승민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재작년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왜 그렇게 계박에 안 정하고, 2016년까지는 그렇게 급격하게 인상 안 하다가 작년 6월 달에 그렇게 인상한 것은 신정부 출범하고 나니까 분위기 봐 가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난 10년 동안에 그 정도의 인상이 두 번이나 있었고요.

○유승민 위원 아니요, 그 정도의 인상은, 충격적으로 1070원 인상한 적은 없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울로 따지면 16%나……

○유승민 위원 16.4%.

그래서 저는 지금은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목표 연도에 맞춰서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승민 위원 제가 질문 그냥 조금만 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가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여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 이랬거든요. 저는 이것은 우리 기업 지배구조에 굉장히 위험한 변화라고 봅니다.

근로자들에 대해서 잘해 주는 것은 좋아요. 다 좋은데, 기업 이사회 안에 노동자 대표를 두는 것, 독일에 그런 모델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것은 우리 현실에서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부총리 의견을 듣고 싶고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줘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서 ‘걸핏하면 정의, 공정을 외치는 이 정부가 어떻게 불과 3개월 전에 직업상담사들한테 가산점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고쳐라’ 이랬더니 고용노동부장관은 전혀 끄떡도 안 해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부총리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노동이사제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아서 제가 여기서 일률적으로 답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야 될 것 같고요.

직업상담사 가산점 제도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지금 정확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위원 그러면 파악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이주열 총재님, 지난 국회 때 제가 이 비트코인 문제를 한번 지적했는데 기억나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송영길 위원** 그때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너무 연구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사실 통화 당국으로서 이에 대한 정의라든지 활용 방안 이것을 좀 정리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강조했던 것은 현재 각 제도권, 금융권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긍정적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좀 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로 송금한다든지 이럴 때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인증 절차나 해킹 위험이나 이런 것을 차단시키면서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분야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지금 금융권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업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연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또 본격적으로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기술적·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현되기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것이 일종의 촉매제가 돼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4차 산업의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중앙 집중해서 서버를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분산형 체제로 가는 것이 모든 사회현상의 일반적 흐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유도해서 부작용, 이것이 자금세탁이라든지 또 도박성이나 투기로 빠지지 않고 실질적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유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인식에 기초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이나 법적 한계를 극복해야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

습니다.

○**송영길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고생이 많으신데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각 정부 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잘 관리가 안 되면 아직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이야기가 언론에 돼서 언론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또 이것을 조정해서 결정하면 오락가락한다고 공격하기 때문에 언론에 잘못 놀아나게 되면 상당히 혼선을 빚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계기로 내 부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시장에 시그널이 혼란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한중 정상회담이 지난해 말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잘 됐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여진이 남아 있지만 그 후속 조치로 오늘 오후에 중국으로 가시는 부총리께서 한중 경제장관 회의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특히 저는 우리나라 자동차시장의 전기배터리 보조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낼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거의 2500만 대, 1년에 3000만 대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차세대 동력의 주도권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가 경제 분야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별도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러·중 간에 자루비노항을 매개로 만들어지는 협력 형태, 즉 일대일로정책과 푸틴의 신동방정책의 접착을 마련한 것을 우리 북방정책과 같이 3자 연합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선 내일모레 한중 경제장관회담에서는 제가 8개 부처 실·국장들과 같이 가서 종합적인 얘기를 나눌 계획입니다. 아주 의제도 다양하고 또 의제에 없더라도 비공식에서 얘기를 할 생각에 있고요.

무엇보다 제일 큰 의미는 정상회담 이후에 경제 쪽에서 고위 채널이 복원되면서 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가능하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우리 조 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제가, 가서서 국제통화도 했고요. 저희가 전적으로 지지를 하고 또 그런 점에서 저희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리고 산자부장관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중국의 능원국과 우리 산자부 간에 슈퍼그리드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릴 것은 동해선 복원 문제인데 사실상 우리 한반도 철도가 대륙 철도와 연결되는 길이 동해선과 경원선, 경의선이 있습니다. 경의선은 DJ 정부 때 이미 완성이 됐고, 경원선은 2015년도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백마고지역을 지난 이 부분까지가 건설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예타 예외사업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돼서 백마고 지역을 지나서, 아직도 DMZ까지는 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은 동해선이라고 봅니다. 경원선은 백두대간을 건너서 원산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화물열차를 많이 운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해선이 부산으로부터 강릉, 제진을 거쳐서 나진, 핫산을 거쳐서 시베리아철도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북핵 문제로 나진-핫산 철도 프로젝트가 아직 복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대비해서 일단 남측 구간인 강릉에서부터 제진까지 약 110km, 약 2조 3000억 정도가 드는 예산인데 이것이 한 5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계나 이게 시작돼 주지 않으면, 지금 철도부지 공간에 다 그냥 건물들이 막 지어져 있고 리조트가 지어져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보상하는 데도 추가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정된 철도에 다른 가설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지금 빨리 이것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예타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원선 사례도 있고요.

다만 지금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은 아직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통일부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화가 덜 돼 있습니다. 부처 간 협의를 해서 구체화가 된 뒤에 남북 교류협력과의 연관성 등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송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 현안이 많고 엄중하여 기재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더 필요하다는 간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재부에 대한 추가 회의 일정은 간사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대로 위원님들께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총리께서 잠시 후 5시경에 이석하실 예정임을 고려하여 부족한 보충질의는 다음 회의 시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위원** 마이크가 계속 안 되네요.

부총리님 얼굴을 보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깐 이것으로 하려는데 이것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감사합니다.

○**이연주 위원** 아까 제가 잠깐 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요, 조금 전에 유승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점심 때 사실 차관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올해 만약에 또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이것은 완전히 그냥 큰 사고가 난다, 그래서 거의 시장이 파괴되고 지금 보는 물가 인상이나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으로 이게 파생되어서 우리가 수습할 수 없는 길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총리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올해는 청와대하고 답판을 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중단이라는 뜻이 아마도 조금 합리적인 선에서 해야 된다는……

○**이연주 위원** 글썄, 그런데 워낙 급격히 올라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주 미미한 인상 외에는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감당하기가 요. 그래서 잘못하면 술뚜껑 들고 사람들이 나오

는 지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들도 했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까 유승민 대표님 질의 때도 제가 신축적으로 보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유 위원님이나 이연주 위원님 질의 내용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제 나름대로 전체 경제를 보면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연도에 공약에 얽매이는 그런 것에 맞춰서 무리하게 가는 것보다 신축적으로 가겠다 하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주 위원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사용자의 전체적인 경영 실적이 올라가면서 함께 올라가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자리도 마찬가지로인데요, 아까 제가…… 일자리대책본부 만들고 대통령 질책하시고 이런다고 일자리가 생기면 그동안 왜 일자리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사실 아주 유감스럽지만 예전의 70년대, 80년대 식으로 정부가, 대통령이 질책한다고 해 가지고 일자리 생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왜 안 생기는지, 어떻게 생겨야 할지를 해법을 마련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대통령께서 해야 될 일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일자리가 숫자 자체도 문제지만 청년 일자리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청년 일자리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예요, 일자리 자체가 없는 것보다. 그러니까 일자리의 수준은 과거의 굴뚝산업시대 그대로 있고 청년들은 지금 학벌도 좋고, 그렇지요? 대학 교육을 대부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런 굴뚝산업의 과거의 그런 식의 일자리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맞는 일자리가 없는 거지 일자리 숫자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그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알바를 전전하게 되고 공무원 찾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 내냐? 청년들이 갈 수 있을 만한 일자리. 결국에는 혁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인력구조의 변화하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수준은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산업구조는 하나도 구조조정이 안 되고 지연이 되어서 지금 산업구조는 과거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지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답은 뭐냐? 구조조정과 혁신성장이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안 나온다.

그러면 구조조정과 혁신성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아까 부총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별로 안 하고 있는 게……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런 것 계속하고 공무원 뽑기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혁신성장의 기초하고 맞습니까, 저촉됩니까? 방향이 어때요?

(조경태 위원장, 박광온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까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질책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질책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엄중한 청년 실업과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그것을 표현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은 생각입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다 같이 우리 정부가 좀 열심히 하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주신 질 높은 일자리를 위해서 혁신성장, 구조개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연주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께 그렇게 하려면 지금은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화 이런 것을 내세워서 고용시장을 더 경직화시키는 것은 혁신성장에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사회안전망은 정부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맞다, 일단 그렇게 가야 된다고 조언을 하셔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리고 있고요. 혁신성장은 저희가 일자리, 소득중심성장과 거의 같은 축으로 또 심지어는 금년에는 더 크게 비중을 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렇게 가시적이고 국민들께 체감하는 것이 아주 단시간에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나 저희 경제팀이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마무리할게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광온** 1분.

○**이언주 위원**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말씀을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세요.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금 고용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 이것 혁신성장하고 반대되잖아요, 방향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아무리 부총리께서 혁신성장하자고 드라이브 걸어도 결과 안 나옵니다. 왜 헛수고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상쇄시키고 저축되고 모순되는 정책을 건어 내고, 그런데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축하지 않는 다른 방식, 그러니까 사회권적 기본권이나 복지나 사회안전망 이런 것으로 일단 해결하고 그리고 한쪽으로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실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취지도 잘 알겠고요. 조금……

○**이언주 위원** 직언을 해서 그러면 방향을 똑바로 잡아야지요,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뭐예요? 제자리든가 후퇴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위원님하고, 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지만 노동시장 문제나

이런 문제도 깊은 토론을 할 수 있었다면 조금 저희 생각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장관께서 직언을 하셔야 돼요, 직언을. 이걸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게 엄청난 문제로 비화가 됐을 때 장관께서 그것 뭐 하러 책임지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대통령께 필요한 말씀이나 직언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언주 위원**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나름대로 소신껏 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직접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온**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이현재 위원**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하셨고 또 답변을 들으면서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투기 과열로 인해서 혼란을 초래한 데는 무엇보다도 정부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글썽요. 예, 뭐 일단……

○**이현재 위원**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12월 13일 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무조정실에서 거래소 폐쇄 등 방안도 검토한다 또 금년 1월에는 법무부장관이 폐쇄한다 등등 해서 1월 16일 날 부총리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못 줘서 송구스럽다 하는 이런 말로 해서 정리가 됐는데 이 가상화폐는 2015년에 조세연구원에서 이미 대안 제시를 했었고, 지난 10년간 논의됐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e머니라고, 이미 전자화폐라고 한 10년간 논의가 되던 거예요. 그리고 16년에 금융위에서 대책회의를 네 번 했고, 그래서 정부가 안이하게 안이하게

보다가 불이 나니까 작년 12월에 부랴부랴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화폐, 가상화폐 이 문제는 우선 두 가지를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우리가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거냐는 하나가 있을 거고, 우리가 4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그러면 블록체인 같은 것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상호 상충돼서 무조건 문제 된다고 그냥 섰다운하고 이런 방법은 안 된다 하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이견 없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이현재 위원 청년 실업,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과감한 청년 실업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자료 보니까 과감한 게 없어요.

지금 부총리께서 우리 기업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의견을 많이 들으시는데 저는 그것은 아주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부총리께서 가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 기업이 하는 얘기 한 가지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기업에 하는 얘기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대기업 포함해서 우리 혁신성장의 주축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에서 제게 하는 얘기 중에 가장 많은 것은, 규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기업인들 많이 말씀하시면, 첫째가 ‘요즘 기업 하기 싫다’, ‘외국 나가고 싶다’ 하는 게 주종입니다. 가장 이것이 뭐냐 하면 규제입니다. 규제 중에서도, 기업환경 어려운 것 중에서도 많이 논의됐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경제가 수용이 감내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최저임금 과감하게 올려놓고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이러한 기현상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근로시간 단축 이것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 30인 이하에 대해서는 52시간 줄이는 걸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정부 내에서 과감하게 또 정부 여당에도, 정부에도 의견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이 경제 활성화 되어 가지고 규제 풀고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일본은 대학생 취업이 팔구십 %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실업률도 최저 2.8%, 완전실업률 2.8% 정도까지 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반면교사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 결국은 기업을 제대로 규제 완화, 정부 지원을 통해서 기업을 활성화시키니까 그렇다.

우리 청년 실업 해결한다고 정부에서 공무원 뽑아서 하겠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듯이 부총리께서도 중국의 경우와 우리 고시촌과 비교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전부 공무원 되겠다고 고시촌에 모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생산적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업으로 나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부총리께서는 지금도 공무원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를 키워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 청년 일자리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기업에 대한 측면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공공부분의 일자리는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또 엄중한 청년 실업을 같이 감안한 현실적인 문제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우리 현실적인 기업의 어려움 대책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외국 제도를 많이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런데 모양만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유턴기업법입니다. 리쇼어링이라고 미국, 일본이 활성화된 것이 외국 기업이 다 들어와서 국내 경쟁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유턴기업을 만들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수도권은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들어와 봐야 노동시장 경직성 또 이러한 임금의 경직성…… 경제원리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줘야 그 사람들이 국내 유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내에 와서 자선사업하는 게 아니고 망하려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양은 있는데 법 같은 것을 한

번 일괄 점검하셔서, 모양만 있는 것 있잖아요. 유턴기업 같은 것 과감하게…… 우리 경제투자자 유구역 있지 않습니까? 열몇 군데인데 아마 인천하고 몇 군데 빼고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 과감하게 혜택 줘서, 외국 기업에는 땅값도 거의 공짜로 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기업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올 때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살아야 모든 문제가, 일자리와 우리 국민생활 또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3만 달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간단히 답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유턴기업에 대한 촉진을 위한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 왔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거기에 더해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만들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짊어 넣어서 보다 더 강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점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오전에 한은 총재께 질문을 못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코스트푸시 요인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비정규직 정규화 그리고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또 노동시장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문제, 그래서 이렇게 코스트푸시 요인이 크기 때문에 물가가 앞으로 상당히 오를 것이다 그렇게 저는 진단을 하는데 지난번에 한은 총재께서 금년도 신년사를 한 것을 보면 물가는 금년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패스트푸드 KFC라든지 신선설농탕, 놀부부대찌개, 고봉민김밥 또 신전떡볶이 이러한 외식업체들이 가격을 지금 경쟁적으로 이미 올리고 있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커피빈도 가격을 올린다, 치킨업계는 공정위가 하도 엄포를 놓으니까 가격은 못 올리고 무료로 제공을 하던 콜라나 무, 소스 이런 것을 유료화하는 그러한

편법을 지금 쓰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환율로 달러가…… 지금 어떻게 보세요, 한은 총재? 지금 달러가 좀……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달러가 작년 10월 이후 절상 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종구 위원 절상이 크지요.

그러면 절상이 크면 결국은 수입물가는 억제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이종구 위원 그렇지요. 수입물가를 낮추는 것 아니에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수입물가를 낮추는 것으로 지금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물가가, 제 진단은.

그래서 한국은행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자물가를 추가로 해서 0.1% 내외의 상승을 시킬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물가를 자극할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한은 총재께서는 3월 말까지 임기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이종구 위원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 총재께 부탁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경제하고 특히 문제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약이 되는 쓴소리를 앞으로 두 달 동안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겪어 보니까 통화 관리 문제 또 가상화폐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하는 문제 이러한 것이 한국 경제에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BOK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것이 참 걱정이 된다 이런 쓴소리를 좀 하시고 부총리도 열심히 들으시고 그래서 아까 많은 분들도 이야기했지만 경제를 결국 돌리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그야말로 파이팅을 해야 되고,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부자들이 지갑을 열고 소비를 좀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야 경제가 제대로 도는 겁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하면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가계대출 규모 이런 것을 내용을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은행의 가계대출이 보통 주택담보대출 또 기타 대출 이렇게 나뉘는

데 주택담보대출보다는…… 그러니까 소위 주택 담보대출이라는 게 부동산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종구 위원** 그것보다는 기타 대출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왜 기타 대출이 이렇게 늘었느냐? 저는 이게 우리 젊은이들의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늘었다, 가상화폐는 물론 블록체인 기술하고 연계는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투기입니다, 투기. 투기이고 그야말로 도박이에요, 도박.

그러면 이것을 잘 구분해서 가지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거래소 폐쇄해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이것을 잘 알려 줘야 돼요, 지금 어린 청년들한테.

얼마 전에 제가 지하철을 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하철 입구부터 지하철 안에 들어가서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엄청나게 선전하고 있더라고. 비트코인이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기네들이 이렇게 거래하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의 강원랜드하고 똑같은 것이다, 강원랜드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젊은이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부총리께서도 잘 지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은행들이 실명거래를 하도록 한다든지 과세를 적절히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온**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잠깐만, 질의하시기 전에요, 부총리께서 정확하게 5시 정각에 일어나시면 되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보충질의 하실 분이 네 분 남으셨으니까 제가 조금 짹짹하기는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네 분 질의를 다 답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온** 송영길 위원님까지 다섯 분 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다섯……

(웃음소리)

제가 좀 급하긴 하지만 가능하면 마칠 때까지 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온** 그러면 시간을 좀 맞춰 주시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 하시지요.

○**김종민 위원** 김종민입니다.

먼저, 부총리께 질문드릴게요.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합니다.

지금 보유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종부세 트라우마 때문에 보유세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때도 하여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보유세를 또 하는 것은 또 문제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도 있고요. 저는 그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거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가 보유세 문제는 어떤 세율로 어떤 세금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세수 확보를 할 것이냐의 목표, 이 목표 관리도 중요하지만 저는 보유세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이게 미치는 영향이 광범하고 그리고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떤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책결정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 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의 종부세 문제도 종부세의 목표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었거나 하기보다는 종부세를 결정해 나가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걸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봤는데요.

부총리께서는 보유세 문제를, 최종적인 보유세의 개편 내용보다도 그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시고 또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보유세 문제가 국민들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참여정부 트라우마 이런 것은 저희가 정책하는 데 그렇게 심각한 고려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어떤 정책을 할 적에 그 정책 목표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보유세 문제에 있어

서 내용 면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가구를 보유한 분들과의 조세 부담 형평의 문제 또는 보유세와 거래세 간의 조화에 대한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 저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을 감안하는 것이지요.

이 과정 관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곧 구성될 재정특위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과정 관리를 충분히 해서 나중에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제가 충분히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과정 관리에 대한 제 의견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한 기재부의 안을 정리해서 나중에 문서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 목표와 관련되어서 부동산 정책 차원의, 그러니까 집값 정책 차원의 보유세 논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유세의 개편 정책의 목표는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정책 목표 자체를.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보상이 땅과 혁신에 대한 보상보다 크기 때문에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혁신주도의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문제로서의 땅 문제, 토지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로 접근해서 혁신주도적인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정책 목표를 두고 그런 차원에서 보유세 설계를 한번 고민해보시라, 그렇다면 이 정책에 대한 토론 과정의 양상이 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땅에 대한 단기 정책 목표에 국한되다 보니까 보유세 논쟁이 되게 제한적이고 되게 왜소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한 고민 좀 해 보시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유세 문제 논의할 때 꼭 필요한 게요, 저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합의하는 과정으로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장 얼마를 올리고 어떤 세금을 어떻게 건드려서 어떤 세수를 건넌다라고 하는 단기적인 정책안보다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고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안에 혁신적 시장경제로 가기 위해서 이 땅 문제에 대한 구조개혁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동안에 어떤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어떻게 이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설계를 가지고 당장 올해는 어떻게, 3년 후에는 어떻게, 5년 후에는 어떻게, 이러한 예측 가능한 시장 변화에 대한 안을 제시해 주면 시장이 준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거든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수용성을 좀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로드맵을 꼭 합의해 나가면서 보유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가자는 거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적극적인 공론화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세·재정특위를 만들어서, 이게 정부 위원회 아닙니까? 정부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실무적인 논의를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이 땅 문제 해결하자는 여론이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해결인지에 대한 공론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막상 실무적인 논의를 비공식적으로 해서 내놓으면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버려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종부제도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조세·재정개혁특위 특위대로 가더라도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공론을 적극적으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들을 믿고 우리 시장경제의 건전성을 믿고 이 문제에 대한 공론을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의견을 주시면 저도 또 추가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김 위원님이 워낙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제가 검토의견을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특히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것은 거의 100% 제가 동의를 하고요. 재정특위가 만들어지더라도 가능하면 김 위원님을 비롯해서 국회 쪽하고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또 공론화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을 하겠고요.

첫 번째 정책 목표 관련해서는 특정한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으로서의 보유세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유세를 보는 정책 목적적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아까 저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정책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은 우리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 차원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정 지역의 집값 안정 대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저와 의견이 같은 것 같고요.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의견을 나누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게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온 김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다른 주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동조선 이걸 연명하느냐 구조조정이나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청산가치 7000억, 존속가치 2000억 실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총리께서 12월에 산업경쟁력 장관회의에서 산업과 금융 측면 균형 있게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1월달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방문하고 다녀가신 후에 부실 조선사에 대해서도 원가 이하의 저가 수주를 허용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견 조선사 처리 문제 관련 정부 입장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지난번에 산업경쟁력강화장관회의를 통해서……

○추경호 위원 우선 결론만 간단간단히 말씀해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거기에서 원칙을 정했고 그 원칙에 따라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아마 2월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 결과가 나오면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해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추경호 위원 중견 조선사에 대해서 실사 결과를 무시하고 저가 수주 등으로 연명시켜 주면 결국 나중에 혈세 낭비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선업 전망, 지금 밝다고 보십니까? 저가 수주 허용하는 게 가능하고 잘하는 방침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제가 임의적으로 밝다 안 밝다 말씀드리는데보다 저희가 컨설팅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고 과감

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추경호 위원 이것 지방선거 앞두고 미룬다 이런 정치적 고려 혹시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경호 위원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서 미래의 우리 경제, 산업을 보고 결정하실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다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지역 경제라든지 또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점도 같이 보완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지역 경제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들도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오늘 보유세 등 많은데 여러 가지 담론·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보유세 인상 쪽에 무게가 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어떤 쪽도 결정이 된 바 없다, 계속 그냥 생각 중이다 이겁니까? 오늘 여당 대표께서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지금 이렇게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부총리 입장 좀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 옵션들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러면 올릴 가능성도 있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배제하지 않고 모든 옵션을 놓고 보고, 아까 김중민 위원님이 참 좋은 의견 주신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또……

○추경호 위원 아니, 부총리께 부총리의 여러 가지 방향성이나 생각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런 프로세스 관리하는 것은 잘하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이제 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또 얘기하실 겁니다.

○추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입장이 없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입장이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추경호 위원 왜냐하면 보유세 관련해서 부총리의 어록을 이렇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지 않습

니다. 저는 일관되게……

○추경호 위원 부총리께서는 발언을 일관되게 하신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전달되는 것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말의 앞뒤를 꿰으면 오해하는데 제 의견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했습니다.

○추경호 위원 즉 보유세 인상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여러 가지 옵션을 열어 놓고 보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예.

그다음에 재건축 연한 연장 관련해서 국토부장관께서 1월 18일 날 그런 시사 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30년, 40년. 그래서 언론 보도가 이렇게 되고 했는데 부총리께서는 1월 26일 날 결정된 바 없다 하면서 보도 자료 또 내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 어떻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보도 자료 낸 건 아니고요, 기자들 질문에 스탠딩으로 답하는 과정에 나온 얘기이고 국토부장관도……

○추경호 위원 아니, 정부에서 그래서 입장 정리하는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1월 26일·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건 아마 그 후의 일일 겁니다. 국토부장관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 역시……

○추경호 위원 그러시면 부총리, 1월 18일 날 국토부장관이 이 발언을 하고 언론은 그다음 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강하게 시사했고, 그리로 가는 것처럼. 그런데 부총리께서 정리하는 발언은 1월 26일 날 나온다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고 만약에 정해진 게 없으면 그때 바로 국토부장관하고 통화를 하시든지 간에 ‘아직 우리 부처 간의 입장이 정리 안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더 나가지 말고 일단 입장은 정해진 것 없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좀 해 주셔야 시장이 한 일주일 동안 혼란이 없지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여기에 따라 국민들은 왔다 갔다 한다고요, 지금 이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국토부장관이 발언한 내용도 그 기사 내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추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 그렇게 나오면 보통 그러잖아요. 국민들의 오해가 있으면 ‘아, 빨리 바로잡아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국토부장관께서 다시 분명히 한번 입장을 이야기하십시오’ 해서 정리를 빨리 해 줘야 되는데 부총리께서는 발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국토부장관이 한 10년 연장이라는 얘기는 ‘10년’ 자 꺼내지도 않았고요. 여러 가지……

○추경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커뮤니케이션 관련 문제다, 그 시사하는 발언은 제가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시장에는 그렇게 알려지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면 국민들은 또 그것을 진실로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한 정리를 부총리님께서는 일주일 뒤에 하고 계신다,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말씀이 끝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시지요.

○추경호 위원 예.

그다음,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장관들 일자리 만들 의지가 있느냐? 일자리는 민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고정관념 여전하다’, 이게 굉장히 시장의 오해가 많거든요. 일자리 만든다는 이 철학을 어떻게 봐야 될지, 다시 정부 중심, 공공부문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냐? 일자리 만들라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주문하는 각종 규제개혁 등등 이런 혁신적인 정책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만드는 사고에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경호 위원 그러니까 또 기재부에서 일자리 대책본부를 만들었는데 제가 ‘일자리대책본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니까 부총리께서 팀장이고 양 차관 다 들어가고 전체 1급 다 포함된 일자리대책본부, 그것 기재부 아닙니까? 그러면 기재부 간판을 기획재정부일자리부 이렇게 하시든지 그게 맞는 거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충정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일자리 걱정을. 또 그 반응을 보이는 게 전체 간

부를 통할해서 그것을 대책본부라고 만들면 국민들께서는 또 보여 주기 식 무슨 조직을 형성하고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정성 없이 볼 우려가 있다, 제가 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책본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기에 어떤 구성이나 봤더니 기재부 전 간부를 그대로 다 넣어 놓고 이게 대책본부라고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혼선 부분에 있어서 재건축 연한 문제는 국토부장관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은 것이 그렇게 보도된 것까지 제가 나서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국토부 소관 일이지요. 국토부장관이 한 얘기가 보도가 이렇게 된 것까지 부총리가 나서서 그러는 것은 저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충분히 경제팀 내에서 그 문제는 협의하고 있었고, 조금 아까도 국토부장관을 만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것으로 서로 입장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와중에 물론 조금 혼선을 빚을 여지가 있는 게 있다면 저희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을 많이들 그 워딩 자체만 가지고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왜곡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대통령님 표현은 지금 에코붐 세대의 앞으로 4~5년 동안에 늘어난 청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줄어드는 청년들을 봤을 적에 그 기간 중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정부가 할 일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 말씀에 제가 덧붙인 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정부의 역할을 더해서 앞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민간 일자리 쪽에 더 역점을 두어야 될 것이다, 그것은 혁신성장일 수도 있고 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을 통한 지원일 수도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대책본부에 대해서는 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기재부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세제 또 거시, 미시, 공공, 대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쪽.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저희 부처 내에서 다른 시각에서 보

는 국·실 간의 의견 조율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가 중소기업에서 나올 수가 있고 해외 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턴기업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창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재부가 다 같이 힘을 합쳐 하자는 그런 뜻이고요.

또 제가 대통령께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반응 보이고 보여 주기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생각을 가지고 대책을 만들자는 것이고 이것을 저는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내용이 굳어지면 경제부처 전체의 청년 일자리에 대한 대책본부가 될지 이런 것도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호 위원 일자리를 민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여전하다, 여기에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신 것으로 지금 언론에 알려지고 발언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은 제가 볼 때 대통령 말씀을 정확하게 콘텍스트를 이해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을 잘라서 하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정부가 여기서 이 에코붐 세대의 정부의 역할을 보다 하자 이런 뜻이지 그것을 어떤 분들은 또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가 했는데 그것은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온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오늘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 대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택임대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너무 파격적인 조세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정 평수 이하의 고가주택 중심으로 해서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분들은 투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정부 정책에 따른 당연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전용면적 40㎡, 그러니까 한 18평 아파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재산세·취득세 이게 다 완전히 면세가 되거든

요, 임대 등록만 하면. 그러니까 역세권 18평 이하의 고가 아파트를 콜렉트하는 분들을 저는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존의 국토부 관료들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기재부가 바꾸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저는 그냥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제도가 최고의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원칙적인 공정과세, 임대소득도 예외 없이 해야 됩니다, 임대소득 과세도.

그런데 지금 보면 부부 합산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또 비과세 이렇게 나오고, 8년 소유하면 75%나 임대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또 70% 경비를 공제해 준다 이렇게 하면 임대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 완전히 예외 없이 그냥 과세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도 지금 부동산을 보유하는 게 적어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에 비해서 이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금으로 그냥 보여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유세 논의들을 여러 가지 하고 계시지만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4월 30일 이전에 주택공시가격을 정하실 텐데 지금 현재는 실거래가 대비 한 50~60%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유세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또 공정가액비율이라는 것을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중부세의 경우에는 80%를 적용하고 재산세 60%를 적용하는데 왜 이렇게 차감을 해 줘니까? 차감을 할 이유가 없지요. 공정가액비율이라는 것을 그냥 시행령으로 정하니까 그것을 제대로 정하세요. 그렇게 하면 보유세 세율 올리는 논란 이전에 원칙대로 보유세를 과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줄 때, 그렇게 되면 제도가 단순하면, 사람들이 이게 변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엄청 남는 장사거나 투기의 요소가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웃기웃거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단순한 제도, 원칙적인 공정과세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 새로 올해 내내 조세 ·

재정개혁 TF 하실 때 이 부분을 정말 면밀하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년 일몰 연장한 게 1년 안에 바꾸시라고 제가 1년 허용을 해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면밀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재님께 간단히, 지금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은행이 사실은 기준금리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하는 것에 비해서 옛날부터 내려온 이 수단이 한국은행에 별로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소극적인 입장으로 이것을 다루고 계신 것으로 듣고 있고, 그 상황은 알겠지만 적어도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는 게 없어지거나 줄어지기 전에는 일단 있는 제도는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이상은 원칙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지방 지원으로서 4.9조 원을 운용하고 계신데 여기 한국은행 규정에는 지역별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이것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별 경제 사정을 고려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1분만 더 주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지역의 경제 사정이 안 좋을수록, 어려울수록, 낙후될수록 더 지원을 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서울은 제외하고 있거든요. 서울은 잘사니까 제외했다는 것은 낙후된 데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분명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나 다른 도에 대한 배분에 있어서는 낙후도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거꾸로 GRDP 지역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잘나가는 경기도는 훨씬 많이 가져가고 어려운, 기업이 없거나 중소기업만 있는 데는 거의 잘 안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서 저는 그 지원 기준을 바로 바꾸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보시는 것은 또 논외로 하더라도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이해도 하고 어떻게 하면 위원님 그 취지에 맞춰 볼까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도모, 그를 통한 양극화 해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주현 위원 잠깐, 죄송한데요. 혹시 부총리께

서 먼저 가셔야 되면 제가 질문한 것에 간단히 대답을 해 주시고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심기준 위원님 한 분 더 남으셔 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갈등인데요.

○박주현 위원 그래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특정 부분의 특정한 요소를 고려해서 운용하게 되면 한국은행의 정책은 그야말로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중립성 문제에 저희들도 부딪쳐서 그 사이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면 지역의 경제 규모로 나누는 것 자체가 선택이거든요. 지역의 경제 규모에 의해서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선택이라면 그 규정에 따라서 지역별 경제사정, 낙후도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는 것도 또 하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제규모를 고려한 것은 그쪽의 수요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수요를 어느 정도 미트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든 한정된 재원을…… 또 기준을 바꾸면 지역간의 불평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박주현 위원 이미 지금 불평등 시정을 안 하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도를 바꾸는 게 좀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금 어쨌든 정부가 바뀌었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확 하기 보다는 일단은 방향 전환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충분히,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십분 이해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온 감사합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현 위원 잠깐, 부총리께서 대답……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관련 세제는 아까 답변드렸지만 금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때 위원님 입장을 저희가 충분히 같이 보도록 하겠고

요.

공시가격 문제는 보유세 문제와 연결 안 시키더라도 국토부에서 현실화시키려고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시행령 개정 사안입니다. 지금 80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도 하여튼 검토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온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심기준 위원님 먼저 하셔야지요.

심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기준 위원 부총리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지금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쨌든 소득의 양극화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선순환 경제구조 확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4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의 최저임금 정책을 사회안전망 구축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해외 주요국의 최저임금 정책동향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나라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금년·작년에 일부 선진국에서도 차이는 있지만 최저임금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올린 곳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18개 주에서 최대 11% 인상을 했다고 들었고요. 영국은 중위임금 60% 목표로 지금 꾸준히 가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박광온 간사, 조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식으로 지금 들쭉날쭉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추세는 좀 일관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기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들 국가의 최저임금은 평균 1만 원 수준을 다 넘고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절대금액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그런 것 같습니다만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중위소득이 50% 정도 수준인데 꽤 많은 국가들은 그보다 위에 있고요. 저희보다 조금 낮은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기준 위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소수 대기업 주도나 부채 주도 그리고 부동산시장 주도의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이 결국 한국 경제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결국은 지속 가능한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하고 혁신성장 두 축이 완성되어야,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중요한 수단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소득주도성장에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일자리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적정한 소득·임금, 세 번째가 필수생계비의 절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축의 하나입니다.

○**심기준 위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어쨌든 악의적인 보도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본질을 왜곡하는 현상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본질적인 문제는 왜곡된 한국 시장경제의 불공정성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 뒤에는 살인적인 수준의 부동산 임대료와 프랜차이즈·대기업의 갑질 등도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진실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 주는 이들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지금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하면 157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논리나 또는 이념에서 보는 그런 시각을 떠나서라도 과연 월 157만 원 급여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인간다운 최저의 삶을 누릴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기준 위원**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률의 급격한 감소를 갖고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과거에 이 정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올렸을 적에, 최근에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단기간

내에 다소의 영향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내에 다 정상적으로 회복한 것을 저희가 통계를 보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난 두 번과 달리 저희가 일자리 안정기금을 통해서 영세한 사업자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보다 좀 더 단축돼서 안정화를 찾고 아주 길게 봐서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총수요 늘어나는 것을 통한, 내수의 진작을 통해서 오히려 고용에 대한 증가 효과가 길게 봐서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기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기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비용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가 업종마다 분석해 봤더니 좀 다르더라고요. 인건비 비중이 얼마를 차지하느냐가 좀 다른데, 사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미 정해진 정책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저희가 성공적으로 이것을 이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이외에 임대료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어려운 분들, 사업주를 도와줄 수 있으면서 사업이 되게끔 하는 것에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기준 위원** 그 통계예요. 우리 자영업자가 한 56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하거나 가족이 같이 하거나 하는 부분이 400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알기로는 400만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한 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통계가 조금 정확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자료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심기준 위원** 한 70%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부총리님,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해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게 안착이 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 보는 어려운 분들의 좋아지는 점도 부각이 되고 또 사업주들도 신청을 많이 하면서 그런 것들이 상생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어떤 아파트단지는 해고 안 하고 같이 상생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증적으로 많이 퍼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특히 1/4분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심기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중입니다만 시간이 되어 부총리의 이석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보충질의입니다.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차관님들 계시는데, 어제 차관회의에 참석하셨지요, 차관님도?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희권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송영길 위원 거기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주도성장 두 바퀴가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 없이 어떻게 분배가 되겠어요? 이 두 가지의 양 바퀴가 가야 되는데 혁신주도성장에서 제시된 혁신의 구체적인 사업 분야가, 지금 기재부가 한 선도사업이 여덟 가지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희권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스마트시티·스마트팜·스마트공장, 3개가 들어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희권 예, 그 부분 들어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나는 그게 너무 어설피게 된 것

같다는 거지요.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공장을 만들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현상, 일자리를 추구하는 이 정부 정책과의 상충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는가 싶은 거지요.

그리고 바이오라든지 전기자동차 이런 게 다 빠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부총리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 송도의 바이오하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지노모도가 결합돼 가지고 현재 연봉 8000 이상 되는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1년에 400개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KAI도 드론이라고 해 봤는데 왜 드론으로 해…… KAI 속에 드론이 들어 있어요. 수리온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합해 가지고 스웨덴 사브, 보잉사랑 APT(미국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를 경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희권 예.

○송영길 위원 300대 하면 17조 규모 아닙니까? 이게 성공하면요……

지금 KAI 종업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한 4000명 돼요, 4000AUD. 수백 명씩 더 늘어나야 된다고요, KAI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거기 사천 주변에 항공 관련 산업단지를 유치하기로 돼 있잖아요. MRO도 유치하게 된 것 아닙니까? 항공기 MRO 사업에 구체적으로 이런 고등 인력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기재부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무슨 스마트하고 4차 산업 이렇게 폼 잡는 그러한 용어를 쓰지 마시고, 현재 우리나라 사업 중에 4차 산업에 진진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의 핵심 진진기지가 KAI입니다, KAI. KAI를 백업해서 17조 사업을 따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적인 분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니까 괜히 KAI 수사해 가지고 수리온 사업 해 가지고 결국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 다 파토 난 것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또 원자력 5·6호기 그만해 가지고 영국에 수주 안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김조원 사장을 내려 보내 가지고 KAI의 그런 부정적 요소를 말끔히 해소해 가고 새롭게 살아나서 록히드마틴과 협력해 가지고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지금 KAI 주가도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5·6호기도 공론화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반대한 사람들까지도 다 설득해서 5·6호기를 성공적으로 다시 공사 재개했고 이것에 기초해서 UAE 사건, 이전 MB 정부가 망쳐 놓은 것 다 임종석 실장이 가서 다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영국의 20조 규모의 2기 우선협상대상자를 한전이 따온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저는 이것을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보수적인 분들이 염려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더 투명하고 능력 있게 이 문제를 풀어 가고 있고 또 캐나다와의 무한 스와프에 성공하고 중국과의 스와프 연장을 통해서 외환위기 문제를 잘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총재, 기재부장관,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 요체는 8개 선도사업으로 정한 게 너무 어설프게 됐다라는 거지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송영길 위원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다 사람 일자리 없애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뭘로 일자리를 차지할 거냐? 소프트웨어 분야 산업을 키워야 돼요. 이게 되려면 소프트웨어 분야의 산업에 대한 일자리 정책이 같이 나와 줘야지요.

그리고 드론으로 한정하지 말고, 드론 해 가지고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당장 KAI에다 집중해서 KAI가 가지고 있는 항공우주산업이 뜰 수 있도록 백업을 해 줘야 되지요. 전기자동차 해 줘야 되고, 바이오시밀러 사업은 정말 유망 산업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일자리를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재부 직원들이 우리나라 산업의 실태를 산자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가속화시켜 주고 조장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스마트, 스마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위원님 말씀대로 KAI를 비롯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요.

○송영길 위원 구체적 산업별로 일자리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몇 개 몇 개.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다만 위원님, 8대 선도사업만이 혁신성장의 바운더리는 아니고요. 이 8개에서는 성과를 조기에 내보자는 것이고, 다른 혁신성장을 위해서 규제 완화라든지 창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기존 산업의 경쟁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영길 위원 예를 들어 하나만 물어봅시다.

저도 인천시장 4년 내내 송도에다 스마트시티를 해 보려고 했지만……

어디를 스마트시티로 정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어느 지역을 상정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일단 시범 지역 두 군데를 최근에 정했습니다.

○송영길 위원 어디로 정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세종시하고 부산을……

○송영길 위원 부산을 정했다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부산 전체는 아니고요. 특정한 지역에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것을 확산해 나가려고 합니다.

○송영길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8개 중에 재생에너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재생에너지 들어 있지요? 재생에너지로만 한정해도 안 되고, 지금 재생에너지도 에너지지만 에너지 이피션시(energy efficiency)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찾아보면 지금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구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차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더 이것을 보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송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73항까지의 안건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74항부터 제95항까지의 안건은 조세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추경호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이언주 위원님, 심기준 위원님.

해당 소관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열 총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양 차관과 관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김 두 관	김 성 식	김 정 우	김 종 민
김 태 년	박 광 온	박 주 현	박 준 영
송 영 길	심 기 준	유 승 민	윤 호 중
이 언 주	이 종 구	이 현 재	정 병 국
조 경 태	추 경 호		

○청가 위원(3인)

김 부겸 심재철 이혜훈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이학재 이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광목
전문위원	박상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부총리겸 장관	김동연
제 1 차 관	고형권
제 2 차 관	김용진
차 관 보	이찬우
국제경제관리관	황건일
재정관리관	조규홍

장관비서관	강승준
기획조정실장	정무경
예산실장	구윤철
세제실장	최영록
경제정책국장	도규상
정책조정국장	방기선
경제구조개혁국장	이억원
장기전략국장	우범기
국고국장	박성동
재정혁신국장	최상대
공공정책국장	양충윤
국제금융국장	김윤병
대외경제국장	우태식
개발금융국장	윤태정
직무대리	김성구
정책기획관	김일환
비상안전기획관	안성도
예산총괄심의관	문상병
사회예산심의관	안태순
경제예산심의관	이규율
복지예산심의관	윤충근
행정안전예산심의관	임기근
조세총괄정책관	김완섭
소득법인세정책관	이계문
재산소비세정책관	김경희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윤열
민생경제정책관	이주면
혁신성장정책관	박준호
국유재산심의관	박충형
재정기획심의관	윤성욱
재정성과심의관	임기근
국제금융심의관	김완섭
대변인	이계문
복권위원회사무처장	김경희
보조금통합관리	이윤열
시스템추진단장	이주면
한국은행	이주면
총재	이주면
부총재	이주면
금융통화위원	이주면
금융통화위원	이주면
금융통화위원	이주면
금융통화위원	이주면
금융통화위원	이주면
감사	이주면
부총재보	이주면

부 총 재 보	허 진 호
부 총 재 보	전 승 철
부 총 재 보	신 호 순
외 자 운 용 원 장	서 봉 국
기 획 협 력 국 장	박 성 준
커뮤니케이션국장	하 근 철
전 산 정 보 국 장	김 욱 중
인 사 경 영 국 장	정 길 영
조 사 국 장	장 민 일
경 제 통 계 국 장	정 규 일
금 융 안 정 국 장	신 운 석
통 화 정 책 국 장	박 종 석
금 융 시 장 국 장	이 환 석
금 융 결 제 국 장	차 현 진
발 권 국 장	박 운 섭
국 제 국 장	이 승 현
국 제 협 력 국 장	유 상 대
경 제 연 구 원 장	손 욱

【보고사항】

○의안 회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10. 윤한홍·김석기·엄용수·정유섭·이채익·강효상·김성태·박성중·송희경·강석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10. 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윤종오·김종훈·이종걸·정춘숙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17. 11. 10. 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윤종오·박주현·김종훈·이종걸·정춘숙 의원 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10. 이찬열·황주홍·전혜숙·김종희·윤영일·유민봉·김해영·문희상·김병욱·이원욱·박인숙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17. 11. 10. 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윤종오·김종훈·이종걸·정춘숙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10. 박주현·장정숙·권은희·김삼화·최도자·채이배·신용현·김수민·정춘숙·제윤경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13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13. 윤호중·김상희·김해영·정춘숙·윤관석·김수민·이찬열·최명길·김현권·홍익표·고용진·양승조·이학영·이재정 의원 발의)

11월 14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7. 11. 14. 김경진·이동섭·송기석·황주홍·김삼화·최경환(국)·장정숙·정인화·김수민·채이배 의원 발의)

11월 15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20. 김한정·강훈식·소병훈·김철민·김영호·박완주·박정·송옥주·유승희·송기현·이용득·원혜영·오영훈·이개호·신창현·문희상·유동수·강병원·여기구·설훈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20. 함진규·박완수·박맹우·김승희·강석진·정유섭·곽대훈·최연혜·조훈현·이장우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1일 회부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1. 백혜련·김영호·박재호·박정·신창현·김성수·김철민·전해철·정동영·정성호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22. 박준영·이언주·이상돈·주승용·김경진·정인화·윤영일·김성식·김수민·최경환(국)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2. 김성식·장정숙·박준영·김종로·김관영·윤영일·김수민·정인화·오세정·신용현·박주선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2일 회부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2. 김동철·홍일표·신용현·김삼화·오세정·김광수·하태경·최도자·윤영일·김중로·권은희·최경환(국)·김경진·이용호·송기석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2. 박홍근·김철민·권철승·변재일·설훈·신경민·위성곤·이춘석·박광온·박완주 의원 발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2. 이용득·소병훈·박재호·원혜영·어기구·강병원·박주민·민병두·김종민·송기현·김철민·전해철·정재호·강창일·김병기·위성곤·박영선·이훈·신창현·박정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2. 이용득·소병훈·박재호·원혜영·어기구·강병원·박주민·민병두·김종민·송기현·김철민·전해철·정재호·강창일·김병기·위성곤·박영선·이훈·신창현·박정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23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3. 곽상도·곽대훈·나경원·유민봉·김석기·박맹우·박덕흠·정태욱·이현승·김재원 의원 발의)

11월 24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7. 홍문표·이종배·김현권·안상수·김성찬·김용태·이개호·박명재·염동열·정태욱 의원 발의)

11월 28일 회부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8. 박맹우·박명재·박덕흠·윤영석·이채익·곽상도·이양수·송석준·이완영·신상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8. 홍의락·김영호·신창현·민홍철·이원욱·문희상·조승래·정재호·김민기·유승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9일 회부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11. 30. 김도읍·김기선·이현승·김종석·김성원·엄용수·곽대훈·백승주·경대수·정갑윤·이은재·김한표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11. 30. 김도읍·김기선·이현승·김종석·김성원·엄용수·곽대훈·백승주·경대수·정갑윤·이은재·김한표 의원 발의)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11. 30. 김도읍·김기선·이현승·김종석·김성원·엄용수·곽대훈·백승주·경대수·정갑윤·이은재·김한표 의원 발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11. 30. 김도읍·김기선·이현승·김종석·김성원·엄용수·곽대훈·백승주·경대수·정갑윤·이은재·김한표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1일 회부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 조정식·이원욱·안호영·최인호·전현희·안규백·윤관석·임종성·이학재·박덕흠·엄용수·강훈식·김정우·윤영일·민홍철·백혜련 의원 발의)

12월 4일 회부됨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7. 12. 4. 최도자·이동섭·주승용·신용현·김수민·홍일표·김삼화·김광수·정동영·이용주·박지원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7. 12. 4. 최도자·이동섭·주승용·신용현·김수민·홍일표·김삼화·황주홍·김광수·정동영·이용주·박지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5일 회부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7. 12. 5. 이원욱·이학영·신창현·신경민·

김정우 · 한정애 · 송옥주 · 김병관 · 김민기 ·
유동수 · 조경태 의원 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2017. 12. 5. 윤영일 · 신용현 · 황주홍 · 정동영 ·
김관영 · 김종희 · 이개호 · 김삼화 · 주승용 ·
정인화 · 민홍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6일 회부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6. 전재수 · 최인호 · 김해영 · 민홍철 ·
이종걸 · 노웅래 · 김민기 · 정재호 · 박재호 ·
유성엽 의원 발의)

12월 7일 회부됨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17. 12. 7. 송석준 · 김상훈 · 강석진 · 김승희 ·
김진태 · 김성태 · 조경태 · 소병훈 · 나경원 ·
엄용수 의원 발의)

12월 8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8. 윤소하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김정우 · 신창현 · 정춘숙 ·
손혜원 · 손금주 · 양승조 · 정동영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7. 12. 8. 이혜훈 · 유동수 · 지상욱 · 정동영 ·
윤영석 · 황주홍 · 박인숙 · 하태경 · 김상훈 ·
이철규 · 정운천 의원 발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8. 윤소하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김정우 · 신창현 · 정춘숙 ·
손혜원 · 손금주 · 양승조 의원 발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7. 12. 8. 이혜훈 · 유동수 · 지상욱 · 윤영석 ·
황주홍 · 박인숙 · 하태경 · 김상훈 · 이철규 ·
정운천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8. 이철우 · 이종명 · 김재원 · 장석춘 ·
김정재 · 김석기 · 김한표 · 이완영 · 김성원 ·
곽대훈 · 박덕흠 · 김태흠 · 성일종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11일 회부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1. 김정우 · 김성수 · 신창현 · 고용진 ·
소병훈 · 김철민 · 전해철 · 윤관석 · 박정 ·
심기준 · 유동수 · 박남춘 의원 발의)

12월 12일 회부됨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2. 조경태 · 박준영 · 김승희 · 유기준 ·
김경진 · 이은재 · 박맹우 · 정우택 · 문진국 ·
최교일 의원 발의)

12월 13일 회부됨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3. 심재철 · 이석현 · 김태흠 · 박맹우 ·
박완수 · 정갑윤 · 이종구 · 이은재 · 나경원 ·
이철규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3. 송영길 · 박용진 · 손혜원 · 유동수 ·
윤관석 · 박영선 · 홍영표 · 김정우 · 조승래 ·
유승희 · 제윤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4일 회부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15. 황주홍 · 김수민 · 신용현 · 조배숙 ·
정동영 · 이동섭 · 김관영 · 이찬열 · 최도자 ·
김동철 · 손금주 · 박선숙 · 남인순 의원 발의)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5. 황주홍 · 김수민 · 신용현 · 조배숙 ·
정동영 · 이동섭 · 김관영 · 이찬열 · 최도자 ·
김동철 · 손금주 · 박선숙 · 남인순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8일 회부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0. 송영길 · 김정우 · 박찬대 · 추미애 ·
노웅래 · 김철민 · 박영선 · 윤관석 · 소병훈 ·
유동수 · 최도자 · 박정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20. 송영길 · 안규백 · 박찬대 · 김철민 ·
윤관석 · 소병훈 · 박정 · 김정우 · 조승래 ·
박영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1일 회부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6. 서형수·문진국·김경협·이용득·최인호·박정·신창현·박찬대·장석준·위성곤·윤호중·홍영표·김경수·강병원·진영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6. 전혜숙·소병훈·정춘숙·장정숙·정재호·김영진·홍영표·황주홍·이찬열·송기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7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7. 변재일·이학영·안호영·전혜숙·김병욱·유은혜·김성수·박홍근·위성곤·김영호·윤관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중섭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7. 정중섭·김성원·정유섭·조훈현·성일중·문진국·정태욱·김정재·김종석·윤영석·이현재·최교일 의원 발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7. 김선동·김규환·박명재·원유철·정갑윤·나경원·강석진·경대수·신보라·정운천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8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중섭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8. 정중섭·성일중·김성원·김석기·문진국·주광덕·김정재·김순례·정태욱·추경호 의원 발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8. 이종걸·박용진·전재수·정재호·이철희·이찬열·민병두·고용진·민홍철·추미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8. 송기현·조승래·노웅래·신창현·김정우·박정·정성호·김병관·추미애·전혜숙·유동수 의원 발의)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12. 28. 정부 제출)

이상 4건 12월 29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9. 백재현·표창원·김철민·김정우·노웅래·홍의락·김영호·양승조·제윤경·소병훈 의원 발의)

2018년 1월 2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2018. 1. 2. 이정현·문진국·이종명·백승주·이철규·김광림·이명수·김중로·조훈현·김석기 의원 발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1. 2. 박광온·김해영·권칠승·전현희·윤관석·이찬열·변재일·백혜련·이춘석·김정우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1. 2. 박광온·김해영·권칠승·신경민·전현희·윤관석·이찬열·변재일·백혜련·이춘석·김정우 의원 발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1. 2. 박광온·김해영·권칠승·신경민·전현희·윤관석·이찬열·변재일·백혜련·이춘석·김정우 의원 발의)

이상 4건 1월 3일 회부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1. 3. 정부 제출)

1월 4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8. 1. 5. 윤호중·변재일·남인순·정성호·이재정·홍의락·정인화·김현권·금태섭·이찬열·이학영·김해영·박용진·전현희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 5. 홍철호·박완수·박덕흠·유민봉·권석창·황영철·김명연·김성원·신동근·김두관·이명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8. 1. 5. 송기현·조승래·노웅래·신창현·

김정우 · 박정 · 정성호 · 김병관 · 추미애 ·
송옥주 · 전해숙 · 유동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8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 발의)

(2018. 1. 8. 정갑윤 · 김도읍 · 김상훈 · 윤영석 ·
박맹우 · 김명연 · 이종명 · 원유철 · 권성동 ·
이진복 의원 발의)

1월 9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 발의)

(2018. 1. 9. 김종민 · 강병원 · 강창일 · 강훈식 ·
김두관 · 김병욱 · 김영호 · 노웅래 · 문희상 ·
박범계 · 박찬대 · 서영교 · 신창현 · 어기구 ·
유동수 · 이수혁 · 전해철 · 전현희 · 조승래 ·
최운열 · 최인호 · 표창원 · 한정애 의원 발의)

1월 10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 발의)

(2018. 1. 10. 박준영 · 이동섭 · 김종희 · 정동영 ·
손금주 · 이용호 · 주승용 · 조배숙 · 윤영일 ·
김경협 · 송기석 · 정인화 · 김수민 · 박지원 ·
황주홍 · 김중로 · 박주선 · 김관영 · 이용주 ·
최도자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8. 1. 10. 이찬열 · 박지원 · 황주홍 · 고용진 ·
주승용 · 박주선 · 송기석 · 박광온 · 민병두 ·
정재호 · 위성곤 · 정성호 · 최도자 · 박정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1일 회부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 발의)

(2018. 1. 11. 심기준 · 송기현 · 제윤경 · 표창원 ·
조승래 · 전해철 · 심재권 · 윤관석 · 박정 ·
강훈식 · 한정애 · 최운열 · 문희상 · 민병두 ·
송옥주 · 김정우 · 전현희 · 전재수 · 신창현 ·
김철민 · 박주민 · 임종성 · 민홍철 의원 발의)

1월 12일 회부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8. 1. 16. 황주홍 · 김동철 · 이개호 · 이춘석 ·
백재현 · 박지원 · 김현권 · 이찬열 · 김종희 ·
유성엽 · 노웅래 · 이채익 · 정동영 · 이완영 ·
김삼화 · 위성곤 · 정인화 · 윤관석 · 민홍철 ·
윤영일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8. 1. 16. 황주홍 · 김동철 · 이개호 · 이춘석 ·
백재현 · 박지원 · 김현권 · 이찬열 · 김종희 ·
유성엽 · 노웅래 · 이채익 · 정동영 · 민홍철 ·
이완영 · 위성곤 · 정인화 · 윤관석 · 윤영일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7일 회부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

(2018. 1. 17. 최도자 · 이태규 · 양승조 · 최경환(국) ·
김경진 · 주승용 · 정성호 · 이언주 · 김관영 ·
하태경 · 박준영 의원 발의)

1월 18일 회부됨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 발의)

(2018. 1. 18. 추미애 · 박주민 · 손혜원 · 안호영 ·
고용진 · 김영호 · 김현권 · 김정우 · 이원욱 ·
김경협 · 유동수 · 한정애 · 조배숙 · 이훈 ·
심기준 · 정춘숙 · 임종성 · 신창현 · 진선미 ·
신동근 · 김진표 · 백재현 · 전해철 · 남인순 ·
오제세 · 원혜영 · 송기현 · 민병두 · 권칠승 ·
이해찬 · 변재일 · 표창원 · 이춘석 · 김해영 ·
소병훈 · 노웅래 · 박남춘 · 박찬대 · 이용득 ·
최운열 · 전현희 · 송옥주 · 박경미 · 최인호 ·
민홍철 · 이종걸 · 어기구 · 이수혁 · 서영교 ·
박범계 · 박광온 · 강훈식 · 홍의락 · 김상희 ·
김병욱 · 신용현 · 김종민 · 정동영 · 기동민 ·
황희 · 이재정 · 김철민 · 권미혁 · 김민기 ·
심상정 · 조승래 · 서형수 · 김두관 · 김한정 ·
박완주 · 유승희 · 문희상 · 박홍근 · 김성수 ·
박정 · 정재호 · 이학영 · 우원식 · 제윤경 ·
박영선 · 오영훈 · 설훈 · 김병기 · 홍익표 ·
인재근 · 전해숙 · 이석현 · 신경민 · 유은혜 ·
우상호 · 진영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 발의)

(2018. 1. 18. 추미애 · 박주민 · 손혜원 · 안호영 ·
고용진 · 김영호 · 김현권 · 김정우 · 이원욱 ·
김경협 · 유동수 · 한정애 · 조배숙 · 이훈 ·
심기준 · 정춘숙 · 임종성 · 신창현 · 진선미 ·
신동근 · 김진표 · 백재현 · 남인순 · 권칠승 ·
이해찬 · 박남춘 · 박찬대 · 이용득 · 최운열 ·
전현희 · 변재일 · 표창원 · 이춘석 · 김해영 ·
소병훈 · 오제세 · 원혜영 · 송기현 · 민병두 ·
노웅래 · 송옥주 · 박경미 · 최인호 · 민홍철 ·
이종걸 · 어기구 · 이수혁 · 서영교 · 박범계 ·

박광온 · 전해철 · 강훈식 · 홍의락 · 김상희 ·
 김병욱 · 신용현 · 김종민 · 정동영 · 기동민 ·
 황희 · 이재정 · 김철민 · 권미혁 · 김민기 ·
 심상정 · 조승래 · 서형수 · 김두관 · 김한정 ·
 박완주 · 유승희 · 문희상 · 박홍근 · 김성수 ·
 박정 · 정재호 · 이학영 · 우원식 · 제윤경 ·
 박영선 · 오영훈 · 설훈 · 김병기 · 홍익표 ·
 인재근 · 전해숙 · 이석현 · 신경민 · 유은혜 ·
 이상호 · 진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9일 회부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 19. 박주민 · 심기준 · 정동영 · 추미애 ·
 김영호 · 노웅래 · 이해찬 · 송옥주 · 이원욱 ·
 안민석 · 송기현 · 신창현 · 문희상 · 박영선 ·
 전채수 · 홍영표 · 김경수 · 안규백 · 표창원 의원
 발의)

1월 22일 회부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8. 1. 22. 조배숙 · 김관영 · 김광수 · 신용현 ·
 유성엽 · 이용호 · 장정숙 · 천정배 · 최경환(국) ·
 황주홍 의원 발의)

1월 23일 회부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8. 1. 24. 정갑윤 · 김도읍 · 박맹우 · 김명연 ·
 金成泰 · 김석기 · 성일종 · 원유철 · 이현승 ·
 김선동 의원 발의)

1월 25일 회부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8. 1. 25. 박정 · 심기준 · 민홍철 · 송기현 ·
 이찬열 · 신창현 · 박찬대 · 김정우 · 인재근 ·
 신경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8. 1. 25. 박정 · 심기준 · 민홍철 · 송기현 ·
 이찬열 · 신창현 · 박찬대 · 김정우 · 인재근 ·
 신경민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8. 1. 25. 박선숙 · 김관영 · 박찬대 · 김선동 ·
 김한표 · 윤영일 · 박지원 · 정태욱 · 민병두 ·
 김용태 · 이찬열 · 장정숙 · 채이배 · 김성식 ·

박용진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8. 1. 25. 박정 · 심기준 · 민홍철 · 송기현 ·
 이찬열 · 신창현 · 박찬대 · 김정우 · 인재근 ·
 신경민 의원 발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 25. 김종민 · 강훈식 · 김두관 · 김철민 ·
 노웅래 · 문희상 · 박광온 · 박정 · 서영교 ·
 신창현 · 심재권 · 어기구 · 유승희 · 이원욱 ·
 이훈 · 전채수 · 정재호 의원 발의)

이상 5건 1월 26일 회부됨